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제1장 손해배상청구

제2장 보도게재청구

제3장 기타 참고사례

제1장

손해배상청구

이 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법리나 사실관계가 포함된 판결문을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가합533902

특정 법인이 해산된 후 다른 법인이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두 법인의 등기임원이 상당수 동일하고 주소가 비슷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다른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원고는 O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는데, O법인은 이후 해산간주되었고 기사삭제는 법원이 명한 기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는 현재 해당 언론을 운영하는 G주식회사를 상대로 기사삭제 지연으로 인한 간접강제금 186,000,000원 및 O에게 받지 못한 손해배상액을 재차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G주식회사는 O법인과 등기임원이 대부분 일치하고, 소속기자도 동일하여 O의 불법행위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O의 채무를 G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소위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두 법인의 등기임원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 점, G법인은 불법행위시 이전에 이미 설립되어 있던 점 등을 들어 O에 대한 간접강제판결에 기하여 G에게 간접강제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시점은 O가 이미 직권폐업한 이후였고, 기사 보도 시점부터 현재까지 G가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G는 해당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보전받지 못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명하였다.

[판결요지]

… O의 2011년 이후 등기임원은 대표이사 P, 사내이사 Q, R, 감사 S이고, 피고의 2018년도까지 등기임원은 사내이사 P, T, U, 감사 S인 사실, 위 T은 P와 부자지간인 사실, … 피고의 과거 본점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X오피스텔 Y호(피고의 본점 주소지는 그 X오피스텔 Y호에서 2018. 12. 19. 현재의 주소지로 변경되었다)인데, O의 본점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X오피스텔 Z호인 사실, O가 법인등기부상 해산간주 된 이후에도 H 인터넷홈페이지에 기사를 게재하는 기자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인터넷홈페이지에 K이 기자로서 2014. 6. 2.부터 2019. 5. 10.까지 게재한 기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O는 1990. 3. 12. 설립되었고, 피고는 2013. 11. 4. 설립되었으므로, 피고가 O의 2017. 8. 2. 자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불법행위를 예상하고 그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와 피고의 임원진 일부만이 중복될 뿐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 등에 비추어 보면, O와 피고가 사실상 동일한 주체이거나 피고가 O의 경영과 운영, 조직, 자산 등을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인 O를 이용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지급채무를 면탈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법인격 부인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는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O에 대한 판결에 기하여 피고에게 직접 간접강제금을 구하는데, 이는 O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피고에게까지 확장하려는 것으로서,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의 성격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O에 대한 간접강제의 판결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간접강제금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20가합533902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F
피	고	G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2. 23.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21. 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8. 8.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11. 4. 설립되어 신문제작 발행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2017. 8. 2. H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I』이라는 제목으로 J 편집국장, K 기자가 작성한 별지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가 게재되었다. 이 사건 기사의

제목 아래에는 「L」라는 부제가 기재되어 있고, 「M」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원고의 과거 대표이사였던 N의 성추행 사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다.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10978호로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 J, K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30. 'O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H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이 사건 기사 중 부제 "F N 성추행까지" 부분, "구직자·비서 강제추행' NF 대표 사임" 부분, 본문 내용 중 별지2 기재 부분을 각 삭제하고, O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O는 이행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O는 J, K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8. 8.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 중 O, J에 대한 부분은 2018. 10. 5. 그대로 확정되었고, K에 대한 부분은 K이 2018. 11. 14.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129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위 법원이 2019. 3. 22. 항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여 2019. 4.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 라. 이 사건 기사는 2019. 4. 12.경 삭제되었다.
- 마. 현재 H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는 피고가 위 홈페이지의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O와 사실상 동일주체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의 지급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O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한 주체이다. 피고는 O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 훼손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한 원고의 O에 대한 소송을 알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기사 삭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기사 삭제를 거부하다가 2019. 4.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여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을 거부하고 잠탈하였으므로, 원고는 O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요구 할 수 있다.

설령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작성하여 게재한 것이고 외형상 O의 행위만이 있었던 것이어서 피고는 O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2018. 10. 9.부터 2019. 4. 12.까지 186일간 간접

강제금 186,000,000원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간접강제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법인격 부인 여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O는 법인등기부상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O의 2011년 이후 등기임원은 대표이사 P, 사내이사 Q, R, 감사 S이고, 피고의 2018년도까지 등기임원은 사내이사 P, T, U, 감사 S인 사실, 위 T은 P와 부자지간인 사실, H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의 신문사 소개페이지에 V가 회장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고, 피고가 운영하는 다른 인터넷 신문사인 W(인터넷주소 2 생략)에도 V가 회장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과거 본점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X오피스텔 Y호(피고의 본점 주소지는 그 X오피스텔 Y호에서 2018. 12. 19. 현재의 주소지로 변경되었다)인데, O의 본점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X오피스텔 Z호인 사실, O가 법인등기부상 해산간주 된 이후에도 H 인터넷홈페이지에 기사를 게재하는 기자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인터넷홈페이지에 K이 기자로서 2014. 6. 2.부터 2019. 5. 10.까지 게재한 기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는 1990. 3. 12. 설립되었고, 피고는 2013. 11. 4. 설립되었으므로, 피고가 O의 2017. 8. 2. 자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불법행위를 예상하고 그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와 피고의 임원진 일부만이 중복될 뿐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V 회장은 명예직으로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는 임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O는 2017. 8. 2. 이전인 2015. 6. 15. 직권폐업되어 경영상태나 재산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와 피고가 사실상 동일한 주체이거나 피고가 O의 경영과 운영, 조직, 자산 등을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인 O를 이용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지급채무를 면탈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법인격 부인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법인격 부인에 따른 간접강제금 청구 부분

갑 회사(법인격 부인의 대상이 되는 다른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O에 대한 판결에 기하여 피고에게 직접 간접강제금을 구하는데, 이는 O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피고에게까지 확장하려는 것으로서,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의 성격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O에 대한 간접강제의 판결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간접강제금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간접강제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부분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가 간접강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간접강제는 O의 의무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의 배상금을 정한 것일 뿐이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위 간접강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 1) 앞서 본 바와 같이 O와 피고가 사실상 동일한 주체이거나 피고가 O의 경영과 운영, 조직, 자산 등을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인 O를 이용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지급채무를 면탈하려 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법인격

부인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한편, O가 2015. 6. 15. 이미 직권폐업 상태였고, 2017. 12. 11. 해산간주된 사실, O가 법인등기부상 해산간주 된 이후에도 H 인터넷홈페이지에 기사를 게재하는 기자의 변동이 없고, 위 인터넷홈페이지에 K이 기자로서 2014. 6. 2.부터 2019. 5. 10.까지 게재한 기사가 있는 사실, O 해산 당시 O와 피고의 본점 소재지가 서울 영등포구 X오피스텔 Z호 및 Y호인 사실, 현재 H 인터넷홈페이지에는 피고가 그 홈페이지의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다른 인터넷 신문사인 W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는 “피고는 1990. 4. 1. 창간한 증권전문지 H를 시작으로, 2014. 5. W를 비롯한 온라인 뉴스 매체 AA(2010. 10. 1. 창간), AB(2000. 1. 1. 창간)를 함께 발행하고 있는 전문 미디어 기업입니다.”라는 내용의 V 회장의 글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10978호 사건에서 O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 K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10978호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하면서 작성한 추완항소장에는 “K 자신은 2018. 4. 4.에 퇴사하였고 서무계 사무원이 소장 부본을 수령하였으며 편집국장 J이 소송 제기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O가 직권폐업한 이후로서 이 사건 기사의 게재 당시인 2017. 8. 2.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H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K, J의 사용자로서 K, J의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 보도의 형식, 내용, 표현방법,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K, J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K 기자가 작성한 이 사건 기사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K, J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K, J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① J가 2017. 7. 19. 원고를 방문하여 홍보팀 직원인 AC 실장을 만나, 원고 측이 2017년 6월경 O에 N 관련 기사 삭제에 대한 대가로 1년에 2회, 회당 200만 원의 광고 게재를 약속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J가 대화 과정에서

광고 게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N 사건을 다시 기사화하여 원고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암시를 하였다. 원고는 2017. 7. 21. 서울구로경찰서에 J를 공갈미수로 고소하였고, J가 2017년 7월 말경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으며, 2017. 8. 2. H 인터넷홈페이지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 ② N의 성추행 사건은 2014년 7월 및 10월경에 발생하였고, 2016년 1월경부터 다수의 언론매체에 기사화되었다.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2017. 8. 2.에 새삼스럽게 N 사건이 재조명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교육계의 성추문 사례들은 모두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들인데, N의 성추행 사건은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어서 다른 사례들과는 이질적이다.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사례의 대부분은 성추문 발생기관과 가해자가 비실명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원고와 N의 경우 부제, 소재목, 본문에서 거듭하여 실명이 언급되고 있다.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원고를 비방할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③ J가 2018년 3월경 원고에 대한 공갈미수 범죄사실로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4)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인 K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10978호 판결에서 인정된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중 1,15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제외한 1,850만 원만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하고 그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1인이 그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절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도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는바,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K로부터 손해배상금 중 1,15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 위 금원을 공제한 1,850만 원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0.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생략 -

원고가 고위공직자로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수반될 정도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피고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공개한 정황에 따라 검사장인 원고가 특정인의 수사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실명 보도하였다. 이 보도의 주요한 근거는 건설업자 M과 그 운전기사였던 P의 진술이었는데, 이후에 모두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는 '공직자에 대한 보도로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언론사가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취재를 진행한 정황이 없고, 형사처벌을 수반할 수 있는 의혹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것은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판결요지]

…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보도는 공직자였던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도의 근거로 삼은 P모씨와 M의 진술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취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 특히 원고가 M 또는 N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은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수반할 정도로 원고의 신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원고와 M의 친분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확인될 경우에 비로소 합리성을 갖게 되는바, 그 친분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P모씨와 M의 진술에 관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의혹 제기는 경솔한 공격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판결문

사	건	2019가합516116 손해배상(언)
원	고	B
피	고	1. C 2. D 3. E 주식회사
변	론	2020. 12. 16.
판	결	2021. 2. 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8.부터 2021.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경까지 F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종합편성채널 ‘G’의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콘텐츠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언론사,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보도국 사회3부에 소속된 기자, 피고 D는 G의 뉴스 프로그램 'H'를 진행하는 앵커이다.

- 나. 피고 C는 2019. 3. 18. 피고 회사의 온라인 뉴스 게시판(I)에 [J]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 기사를 게재하고, 피고 D, C는 같은 날 H에서 [K]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으며, 피고 C는 그 다음날 피고 회사의 온라인 뉴스 게시판에 [L]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이들 보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건설업자인 M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친분이 없어 M과 함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M의 별장을 출입한 적도 없으며, N에 대한 수사과정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원고가 M과 함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하였다거나 M의 별장에도 방문하는 등 M과 친분관계가 있어 N에 대한 수사에도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피고들의 이러한 명예훼손으로 원고는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각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19. 5. 29.경 이 사건 각 보도에 담긴 원고의 M과의 친분관계, 별장 출입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을 공개하였고, 그러한 정황에 터잡아 원고가 N에 대한 수사에 관여하였으리라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고위공직자였던 원고를 감시, 비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한 이 사건 각 보도는 악의적이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원고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도 아니므로, 언론의 자유에 내재된 한계를 벗어난다고 할 수도 없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的重要内容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한편,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을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갑 제 8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O, M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보도는 공직자였던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M의 운전기사였던 P모씨는 N에 대한 피의사건의 경찰조사단계에서 'M이 원고와 전화 통화도 하고, 원고가 M의 별장에 한두번 정도 온 적이 있어 얼굴이 기억난다. 원고는 M과 호텔에서 만나거나 일식집에서 식사를 했던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다. M은 2018. 12. 26.과 2019. 1. 25. 두 차례에 걸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8팀 소속 검사와의 면담에서 '원고도 알고 지내는 사이이나 누구 소개로 만났는지 잘 기억나지 않고, 별장에 왔는지도 기억이 불분명하나 왔더라도 가족 단위로 들렀을 것이다. ()가 원고를 골프장에 데리고 왔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들은 이들 진술을 이 사건 각 보도의 주된 근거로 삼았다고 보이나, 그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로부터 수사 권고를 받은 검찰 수사단에서 P모씨를 조사하였는데, P모씨는 그 조사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원고의 사진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당시 실제로 그러한 진술을 하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원고가 M의 별장을 출입하고 M과 만난 사람인지 자체를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여 이전 경찰조사단계의 진술내용을 반복하는 진술을 하였다.

○ P모씨가 조사경찰관으로부터 N 등 M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의 사진을 원고의 사진과 함께 제시받음으로써 제시된 사진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M과 일정한 친분관계를 가진다는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더욱이나 P모씨가 진술 시점으로부터 6~7년 전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며 희미한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암시가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 M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원고와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별장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와의 면담에서 원고와 친분이 있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M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직접 관계되지도 않는 사안에 대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무릅쓰고 거짓증언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 M은 위 면담과정에서도 원고와 친분을 갖게 된 경위, 원고와 만난 장소와 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 자체로도 신빙성을 보장하는

자료 없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M과 면담이라는 절차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 형사절차상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 나아가 여기서 나왔다는 불명확한 대화내용이 특정언론에 전달되어 보도되는 과정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 ②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도의 근거로 삼은 P모씨와 M의 진술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취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 ③ 검찰인사와의 폭넓은 친분관계를 도모하던 M의 휴대전화에 원고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M이 원고와 통화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M이 소지한 명함, 다이어리 등의 물품에서 원고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M이 원고와 만난 적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 ④ N가 1997.경 Q검찰청 R지청장으로 근무한 후 원고가 2009.경 같은 보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원고가 N를 통하여 M과 친분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추론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으로 보인다.
- ⑤ 특히 원고가 M 또는 N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은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수반할 정도로 원고의 신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원고와 M의 친분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확인될 경우에 비로소 합리성을 갖게 되는데, 그 친분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P모씨와 M의 진술에 관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의혹 제기는 경솔한 공격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여부

이 사건 각 보도가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및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된 것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고가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 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보도의 제목과 내용,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사용된 어구, 보도 시점, 방영 시간, 이 사건 각 보도 중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이 사건 각 보도가 원고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피고 회사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7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도일인 2019. 3.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2.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생략 -

1-3. 서울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나2027608

“가짜뉴스 재생산 통로”. “가짜뉴스 공장으로 지목된”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내용이고 대중이 허위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일방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피고는 종교단체인 원고가 이슬람 난민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비롯하여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원고는 1심에서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원고에 대해 ‘가짜뉴스 공장으로 지목’ 등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였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청구가 기각되자 손해배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법원은 보도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보도하며 허위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원고의 배포 정보를 대중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일방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사회구성원 사이에 해당 정보의 진위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건전한 토론을 활성화시켜 이에 기초한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가짜뉴스 공장’ 등의 표현이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 기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이 사건 각 기사는 … 사회적 관심이 있는 쟁점에 관한 건전한 여론 형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 원고가 언론기관 등을 통해 전파한 차별금지법 등에 관한 내용은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주제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구성원 사이의 포용과 화합의 측면에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 원고는 기독교 반동성애 운동 등을 하는 단체로서 언론기관, 홈페이지, 산하 기구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고, … 그 전파 범위나 영향력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원고를 “가짜뉴스 공장” 등으로 표현한 것은, 대중이 허위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원고의 배포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일방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사회구성원 사이에 해당 정보의 진위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건전한 토론을 활성화시켜 이에 기초한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 위와 같은 표현은 허위정보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진실성에 관한 논란이 있는 정보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오인·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한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 볼 수 있고,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 기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20나2027608 손해배상(언)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가합528515 판결
변 론 종 결		2021. 3. 5.
판 결 선 고		2021. 4.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B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 B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I(인터넷주소 1 생략) 초기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기사 제목을 나열한 란에 'J'이라는 제목을 7일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검색되도록 하고, 2018. 10. 17.자 'L'라는 제목의 기사 및 2019. 1. 30.자 "S"가 게재되는 동안에는 각 그 하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함께 게재하라.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 피고 C, D은 B과 연대하여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 F, G, H에 대한 각 패소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 피고 C,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2005. 10. 25.경 저개발국가와 교류협력 및 구호.문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2008. 10. 11. 총회의 결의로 기도운동단체인 'Q'과 통합하였고, 대외적으로 'Q'으로 알려진 단체이다.
- 2) 피고 B은 인터넷신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I'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 D은 I 소속 기자이다.

나.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

- 1) V 주식회사는 2018. 9. 27. 자신이 운영하는 일간지 V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AC" 라는 제목 아래 기사(갑 제6호증의 1, 이하 'V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V 기사에는 'Q'이라는 기독교 종교단체가 이슬람 난민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비롯하여 확인되지 않은 총 22건의 '가짜뉴스'들을 만들었고, 이러한 '가짜뉴스'가 K 채널 20곳을 통해 유통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2) 피고 B은 2018. 10. 17. I에「L」라는 제목으로 피고 C이 작성한 별지2-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3) 피고 B은 2019. 1. 30. I에「S」라는 제목으로 피고 D이 작성한 별지2-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하고, 피고 B이 게재한 기사를 통틀어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제2 기사에는 원고에 대하여 '가짜뉴스 공장'으로 지목된 Q'으로 표현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건 각 기사	기사 내용	원고 주장
제1	Q의 R 대표가 “Q이 I 관련 가짜뉴스를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 R 대표는 <I> 관련 가짜뉴스 배포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없고, 유감을 표시한 사실도 없다.
제2	R 대표는 T의 'U' 방송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할 경우 징역,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2013년 10월)부터, '헌법 속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바꾸면 이슬람이 확산될 수 있다'(2018년 3월)는 비교적 최근 이슈까지 다양한 허위, 왜곡 정보를 유포하였다.	- 차별금지법안상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차별행위에 대하여 그 처벌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두고 있으므로, R 대표가 'U'에서 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할 경우 징역,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발언이 허위가 아님에도 원고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 “가짜뉴스 공장'으로 지목된”, “가짜뉴스 재생산 통로”라고 표현하는 등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훼손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가) 이 사건 제1 기사

갑 제3호증의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C은 이 사건 제1

기사에서 “Q의 R 대표가 Q이 I 관련 가짜뉴스를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했다”고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제1 기사에서 언급된 I 관련 가짜뉴스는 인터넷 등에 게시된① I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정당화하는 매체이다, ② I가 중복 좌파 인터넷신문이다, ③ I가 편파적인 보도로 교회를 죽이려고 한다 등의 글이고, I는 위와 같은 글을 ‘I 관련 가짜뉴스’라고 지칭하였다. 이 사건 제1 기사에 포함되어 있는 ‘I 관련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Q의 산하 기구인 AH(이하 ‘AH’이라 한다)가 인터넷상에 공유한 I 관련 게시 글이 ‘I 입장에서는 어떠한 의도하에 I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I의 ‘의견표명’이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1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 B, C은 이 사건 제1 기사를 통해 “Q의 R 대표가 ‘Q이 I 관련 게시 글(I 입장에서 I에 관하여 왜곡된 것으로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정보)을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했다”는 사실(이하 ‘제1 쟁점사실’이라 한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제2 기사

갑 제3호증의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D은 이 사건 제2 기사에서 “Q의 R 대표가 2013년 10월경 T의 ‘U’ 방송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할 경우 징역·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왜곡 정보를 유포하였다”고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D은 이 사건 제2 기사를 통해 “Q의 R 대표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할 경우 징역·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하였다”는 사실(이하 ‘제2 쟁점사실’이라 한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가) 제1 쟁점사실에 대하여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B, C이 이 사건 제1 기사에서 적시한 제1 쟁점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Q의 산하 기구인 AH은 2012. 12. 13. Q 내부 회의에서 “□AP”라는 제목으로 ① AI, ② AJ, ③ AO, ④ AK, ⑤ AQ 목사 관련 글 올림 등의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에 공유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이하 위 보고 내용을 ‘AH 보고내용’이라 한다).

(2) I 기자인 피고 C이 2018. 10. 17. 원고의 대표자였던 R에게 전화를 걸어 AH

보고내용에 관하여 문자, R가 이에 대하여 답변하면서 피고 C에게 “저희가 그런 얘기 나오면 저희들이 전체 회의 때는 시정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없으면 된 거고, 또 나오면 또 얘기 하는데...(중략) 그런 것들은 저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 C과 R의 대화 내용(을 제3호증)에 비추어 보면, R는 ‘I’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① 내지 ⑤항의 글들을 작성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에 공유하였다는 ‘AH 보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I 기자인 피고 C에게 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제2 쟁점사실에 대하여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⁶⁾ 제42조에 따르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차별금지법 상 구제절차를 구한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등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되고, 만약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서 단순히 동성애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제2 쟁점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위법성 유무

가) 관련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6)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의하여, 2006년 처음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폐기 또는 철회되어 2013년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된 후 이 사건 각 기사 게재 당시까지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지 않았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각 기사 게재 당시 최종적인 법안인 2013년 차별금지법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공익성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가 산하 기구를 통해 인터넷 등에 게시한 언론기관인 I 관련 글과 원고가 T을 통해 주장한 ‘차별금지법’ 내용의 당부에 관한 논란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관심이 있는 쟁점에 관한 건전한 여론 형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2) 상당성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1, 2 쟁점사실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허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는 2012년경 ‘AH 보고내용’과 같은 내용의 글을 통하여 인터넷상의 여러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인터넷언론사로서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받아온 곳으로 보이는 점, ② I는 2018년경 우연히 위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된 후 일부 기독교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관한 기사를 기획하던 중에 공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원고’와 기독교계 방송인 ‘T’에 관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피고들은 위와 같이 기획 취재를 하면서 원고 대표자였던 R와 직접 통화하거나 원고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1, 2 쟁점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해 적시한 제1, 2 쟁점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허위로 볼 여지가 있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모욕적 표현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 1) 우선 “가짜뉴스 재생산 통로”라는 표현에 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기사는 기독교계 방송인 ‘T’의 공공성 등을 비판하면서 T을 수식하는 표현으로 “가짜뉴스 재생산 통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다음으로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 “가짜뉴스 공장으로 지목된”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본다.

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표현이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가 산하 기구를 통해 인터넷 등에 게시한 언론기관인 I 관련 글과 원고가 언론기관인 T을 통해 주장한 ‘차별금지법’ 내용의 당부에 관한 논란이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사회적 관심이 있는 쟁점에 관한 건전한 여론 형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2) 원고가 언론기관 등을 통해 전파한 차별금지법 등에 관한 내용은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주제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구성원 사이의 포용과 화합의 측면에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 원고는 기독교 반동성애 운동 등을 하는 단체로서 언론기관, 홈페이지, 산하 기구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고, V 기사에서 언급된 이른바 ‘가짜뉴스의 유포 내지 유통 채널 분류기준에 비추어 보면 그 전파 범위나 영향력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과 원고의 지위 및 원고가 배포하는 정보의 전파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에서 V 기사를 근거로 원고를 “가짜뉴스 공장” 등으로 표현한 것은, 대중이 허위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원고의 배포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일방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사회구성원 사이에 해당 정보의 진위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건전한 토론을 활성화시켜 이에 기초한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4)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표현행위의 내용과 형식 및 이 사건 각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표현은 허위정보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진실성에 관한 논란이 있는 정보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오인·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한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 볼 수 있고,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 기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5) 원고는 홈페이지, 산하 기구의 활동, K 채널 등을 통해 공공의 영역에 자신을 스스로 노출시키면서 대중에게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고 있고, 홈페이지, 산하 기구의 활동이나 K 채널 등을 통해 대중에게 자신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적인 기사 내용을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표현으로 인해 원고를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별지 생략 -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가소1868930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발언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방송한 것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사실관계]

피고 방송사는 원고가 인터뷰를 거부한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원고가 악질적인 건물주로서 언론의 취재와 인터뷰도 거부한다는 인상을 줄 여지가 있었다. 이 사건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되었는데 피고 언론사가 반론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취하되었다. 피고는 반론 게재 후 취하시 부제소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음성권 침해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기사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며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판결요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인터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한 발언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방송하게 한 것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기사의 당사자이고, 원고의 발언내용이 방송됨으로써 원고 측이 악질적인 건물주로서 언론의 취재와 인터뷰도 거부한다는 인상을 줄 여지도 있어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기사내용이 전적으로 진실한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19가소1868930 손해배상(언)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2021. 4. 14.
판	결	2021. 5. 12.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1. 22.부터 2021.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인터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한 발언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방송하게 한 것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들은 언론중재위원회의 담당 조사관을 통하여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원고의 반론을 실어주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도 부제소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불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들은 또, 대화 당사자 사의에서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대상이 아니고,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내용도 아니며, 원고 측의 반론을 듣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이고, 방송시간도 짧고 음성변조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발언내용이 삽입된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원고에 대한 취재와 방송의 목적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기사의 당사자이고, 원고의 발언내용이 방송됨으로써 원고 측이 악질적인 건물주로서 언론의 취재와 인터뷰도 거부한다는 인상을 줄 여지도 있어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기사내용이 전적으로 진실한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데, 원고의 직업, 피고들이 원고를 취재하고 이 사건 기사를 방송하게 된 목적과 경위, 방송보도의 형식과 내용, 방송시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피고들은 위 금액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조정은 당해 분쟁뿐 아니라 관련된 권리관계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특정 기사만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해도 조정합의의 대상이 해당 기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대입시학과 소속 강사와의 분쟁에서 소송대리를 맡았던 변호사였다. 해당 소송에서 입시학원의 댓글 조작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입시학원측은 원고가 댓글을 조작한 증거를 가지고 학원측에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였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원고는 입시학과와 해당 고소 내용을 보도한 3개 언론사와 담당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피고 언론사 중 D사의 일부 보도에 대한 반론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조정 결과 양 당사자간 반론보도 게재와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피고 D의 보도 중 조정신청대상이 아닌 보도에 대해서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부제소합의의 내용 중 ‘이 사건 기사 및 B(입시학과) 관련 기사에 대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부분을 들어 원고와 입시학과(B) 관련 기사에 대한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원고의 입시학과 및 다른 언론사에 대한 청구도 보도내용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판결요지]

…원고는, 제1기사는 조정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위 조정조항 제5항 중 “B 관련 기사” 부분이 착오로 삽입된 것에 불과하므로, 제1기사에 관하여도 부제소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조정은 당해 분쟁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권리관계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선행기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정합의의 대상이 반드시 선행기사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원고는 위 조정합의 이전인 2019. 2. 7. 이미 피고 C, D를 상대로 제1기사 작성. 보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해둔 상태였다. 즉 원고는 선행 기사뿐만 아니라 제1기사에 관하여서도 분쟁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상태에서 “B 관련 기사”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조정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조정심리 중 후속보도에 대한 언급과 조정조항 수정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문언이 단순히 착오로 삽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20가단5171777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3. 주식회사 D 4. E 5. F 6. G 주식회사	
변	론	총 결	2021. 4. 7.
판	결	선 고	2021. 4. 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E, F, G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에게,
 - 가. 피고 C, 주식회사 D은 각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 나. 피고 E는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 다. 피고 F, G 주식회사는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각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법무법인 H(대표변호사: I, 이하 'H'라 한다)의 구성원변호사였던 사람이다.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최초 언급 시외에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대학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 피고 주식회사 D은 인터넷신문 "J"(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C는 피고 D 소속 기자이다. 피고 E는 인터넷신문 "K"(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소속 기자이다. 피고 G 주식회사는 "M"와 그 인터넷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를 발행,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F은 피고 G 소속 기자이다.

나. 고소사건 경과

- 피고 B은 수학강사 N(예명 "O")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6816호)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과정에서 피고 B이 댓글조작행위를 하였는지가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 피고 B은 위 소송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H는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P)에서 N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I와 원고는 2017. 1.~2.경 몇 차례 피고 B의 경영지원실장 Q을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Q은 2017. 2. 10. 'R'에서 만나 원고 측이 확보하고 있다는 댓글조작행위 증거와 관련하여 이야기하였다.
- 피고 B은 2018. 10. 31. I와 원고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다. 고소사실 요지는 『I과 원고가 공모하여, 원고가 2017. 2. 10. 위 사우나에서 Q에게 '피고 B이 댓글 조작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100억 원을 내놓으면 자료를 넘기겠다'고 협박함으로써 피고 B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 B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었다.
- I와 원고는 2019. 9. 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기사 작성.보도

- 피고 B이 I 등을 고소했다는 내용은 2018. 11. 1. 인터넷신문 "S"에 최초 보도된 후 그

7)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폄하.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 및 댓글을 작성하고, 자기 학원이나 강사를 옹호하는 내용의 게시물 및 댓글을 작성하거나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행위

무렵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널리 보도되었다. 한편 위 최초 보도에는 고소된 사람이 “I 변호사 등 2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I 외 나머지 1명이 원고임을 추측케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 이후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후속기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사(별지 1~3)를 작성.보도하였다. 이 사건 기사에는 피고소인으로 “H 소속 I 변호사와 A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다.

기사	관련 피고	일시	매체	제목
제1기사	C, D	2018. 11. 6.	“J”	T
제2기사	E	2018. 11. 6	“K”	U
제3기사	F, G	2018. 11. 7.	“M”	V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6호증, 을가 제11,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기자들에게 이 사건 고소장을 배포하거나 이에 관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사주함으로써 이 사건 기사가 작성.보도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이 제공하는 고소장과 보도자료에만 의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허위 내용인 이 사건 기사를 작성, 보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원고의 성명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기사 작성,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 C, D에 대한 부분

- 1) 피고 C, D은, 제1기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위 피고들 부분)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24호증, 을라 제1~3호증의 기재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 C, D은 제1기사에 앞서 2018. 11. 1. 『W』라는 제목으로 I과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갑 제2호증의 1, 이하 '선행기사'라 한다)를 작성· 보도하였다.

- 원고는 선행기사와 관련하여 2018. 12. 31.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79067호)를 제기하였고, 2019. 2. 1. 피고 D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취지의 언론조정신청을 하였다.
- 2019. 2. 20.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기초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조정사항

1. 피신청인[피고 D]은 2019. 3. 6.까지 신청인[원고]에게 10만 원을 지급한다.
- 2~4. 피신청인은 2019. 2. 19.부터⁸⁾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이 이루어지기까지 1일 5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5.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신청을 모두 포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79067 사건의 소는 취하하고, 향후 이 사건 기사 및 B 관련 기사에 대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위 조정 성립 후 원고는 위 2018가단5279067호 사건에서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 2)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위 조정조항 제5항은 “향후 이 사건 기사(선행 기사를 의미한다) 및 B 관련 기사”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서 부제소합의에 해당하고, 그 분쟁 대상이 되는 “B 관련 기사”에 제1기사가 포함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⁹⁾

-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기사는 조정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위 조정조항 제5항 중 “B 관련 기사” 부분이 착오로 삽입된 것에 불과하므로, 제1기사에 관하여도 부제소합의가

8) 역수상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며, 조정조서에는 “2019. 2. 26.부터”로 수정되었다.

9) 피고 C는 위 조정합의의 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나 피고 D은 그의 직원으로서 선행기사 및 제1기사 작성자인 피고 C를 위하여 원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 위 조정합의 중 ‘피고 D의 임직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부분은 제3자(피고 C)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 C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제소가 부제소합의에 위배된다는 본안전항변을 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조정은 당해 분쟁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권리관계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선행기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정합의의 대상이 반드시 선행기사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위 조정조항 제5항의 “향후 이 사건 기사 및 B 관련 기사” 문언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일의적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처럼 비슷한 시기에 다른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조정합의에서의 문언과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위 “B 관련 기사” 문언이 착오로 삽입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 원고는 위 조정합의 이전인 2019. 2. 7. 이미 피고 C, D을 상대로 제1기사 작성.보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해둔 상태였다. 즉 원고는 선행 기사뿐만 아니라 제1기사에 관하여서도 분쟁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상태에서 “B 관련 기사”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조정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조정심리 중 후속보도에 대한 언급과 조정조항 수정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문언이 단순히 착오로 삽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부제소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문언이 향후 피고 C, D이 작성.보도 하는 피고 B 관련 모든 기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위 조정합의 당시까지 작성.보도되었고 당사자들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제1기사에 관하여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피고 B에 대한 부분

피고 B이 그 주장의 공갈미수 행위가 있었다는 2017. 2. 10.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후인 2018. 10. 31.에야 I과 원고를 고소하였고,¹⁰⁾ 그 직후인 2018. 11. 1.부터 위 고소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B이 기자들에게 고소장을 배포하였다거나 보도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수사기관이 기자들에게 고소장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이나 일부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작성 당시에 이미 기자들 사이에 고소장이 ‘풀려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밖에 원고

10) 원고는, I이 2017. 10. 24.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것을 기회로 피고 B이 댓글조작행위를 감추려는 의도(이른바 ‘물타기’)에서 허위 내용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피고 B이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청구원인은 아니다.

주장처럼 피고 B이 기자들에게 고소장 등을 배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E, F, G에 대한 부분

1) 주장 정리

원고는 위 피고들이 제2, 3기사를 작성·보도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원고의 성명권, 인격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명예나 성명권은 모두 인격권이라는 상위 개념에 속하는 권리에 해당하고, 제2, 3기사 작성·보도와 관련하여 명예와 성명권 외에 다른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어 보인다.

다만 원고는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는 구별하여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원고의 주장을 ① 피의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성명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과 ② 원고가 공갈미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 두 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본다.

2)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불법행위 성립 여부: 부정

가) 제2, 3기사에는 피고소인으로 “H 소속 A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고, 당시 H 소속 변호사 중 X씨 성을 가진 이는 원고뿐이었으므로, 제2, 3기사에서의 “A 변호사”는 원고로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2, 3기사에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2, 3기사는 ① 피고 B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는 부분과 ② 고소장에 기초한 고소사실의 요지 및 이와 관련한 피고 B의 주장을 소개한 부분 및 ③ H 측의 반박 내용을 소개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①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고, 11) ②, ③ 부분도 피고 B 측과 H 측의 주장을 소개한 부분으로서 그 주장내용과 보도내용이 일치하여 진실에 부합한다.

○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11) '기록 검토'가 '수사 착수'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과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뜻하므로(표준국어대사전), 검찰이 고소사건에 관하여 기록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을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므로 이를 허위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제2, 3기사에서는 “B 측은”, “고소장에 따르면”, “B 측의 주장이다”, “B 측에 따르면” 등으로 원고 등의 혐의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피고 B 측의 주장일 뿐임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피고 B 측의 주장 다음에 곧바로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H 측의 반박까지 소개되었고, 양자 사이에 분량상 균형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제2, 3기사에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대립되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이 균형적으로 소개되어 있어 일반 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제2, 3기사에서 언급된 원고 등의 혐의 내용이 그대로 사실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이 암시의 방법으로 원고 등이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피의사실 보도로 인한 성명권 침해 및 명예훼손 불법행위 성립 여부: 부정

가) 명예훼손 불법행위 성립 여부

원고가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제2, 3기사는 ‘변호사인 원고가 댓글조작행위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피고 B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내용으로서,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 직종사자인 변호사로서의 원고의 신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그 보도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보도내용은 진실에 해당한다.

결국 위 피고들이 제2, 3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되었다고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성명권 침해 불법행위 성립 여부

개인은 자신의 성명 표시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나, 성명의 표시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 있으며 그 표현내용, 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의

표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3기사에는 “A 변호사”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을 뿐 원고의 실명이 명시된 바 없다. 나아가 제2, 3기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그 보도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 3기사를 통하여 원고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그리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별지 생략 -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11730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가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을 경우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는 공기업인 원고가 야외 행사를 개최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하였고 원고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며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행사에 이용된 트래킹 코스만을 제공하였을 뿐 해당 행사의 주최자가 아니었고, 피고 언론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이전인) 2년 전 행사 사진을 보도에 첨부하며 원고가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보도하였으며, 사진에서 실제 주최자가 명시된 부분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도 했다. 법원은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고, 해당 행사의 주최자가 원고가 아님을 피고가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보도내용을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며 피고 언론사에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판결요지]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한 회사는 원고가 아닌 H이고, 원고는 이 사건 행사에 I 내 트래킹코스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뉴스기사에 첨부된 팝업창 사진 원본에도 이 사건 행사 주최자가 H라고 명시되어 있다. 피고 B는 이 사건 뉴스기사에 팝업창 사진을 첨부하면서 이 사건 행사 주최자가 원고가 아닌 H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이 사건 팝업창 사진에 주최자로 명시된 H를 모자이크 처리하였고, 별도로 이 사건 행사 주최자가 원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뉴스기사에 첨부된 참가자들 단체사진은 이 사건 행사 당시가 아니라 2년 전에 개최된 동일한 행사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뉴스 기사를 작성할 당시 위 사진이 이 사건 행사 당시 사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확인해보지도 않았다.

… 피고들로서는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원고가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하였는지 여부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 이 사건 뉴스 기사에는 ‘정부의 집단행사 자제 권고를 무시’ 한다거나 ‘공기업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는바, 그 표현이나 이 사건 뉴스 기사의 작성 및 게재 경위, 그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판결문

사	건	2020가단11730 손해배상(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1. B 2. 주식회사 C
변	론	2021. 5. 26.
판	결	2021. 6. 2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9. 29.부터, 피고 주식회사 C는 2020. 8. 28.부터 각 2021. 6. 23.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 D 일대에서 호텔, 카지노, 리조트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인터넷 뉴스를 제작, 배포, 게재하는 뉴스통신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 나. 피고 B은 “E”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정부의 집단행사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술마시고 달리기 대회(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의 뉴스기사(이하 ‘이 사건 뉴스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2020. 7. 17. 06:00경 이 사건 뉴스를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F, G 등 포털 사이트에 제공하였다.
- 다. 피고들은 2020. 7. 17. 15:02경 이 사건 기사에 게재된 참가자들의 단체사진이 이 사건 행사 당시의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는 이 사건 기사에 게재된 사진 3장(맥주를 마시는 사진, 팝업창 사진, 참가자들의 단체 사진)을 삭제하고 기사 내용을 일부 수정한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 기사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이고, 이 사건 행사 당시 정부는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H는 이 사건 행사 당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기사에 게재된 단체사진은 이 사건 행사 당시의 사진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고, 정부의 방역지침도 준수하지 아니한 것처럼 허위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F, G 등 포털사이트에 제공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이로 인하여 기업이미지 및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명예가 훼손되는 무형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기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허위 내용의 기사가 아니다.

- 가)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는 원고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행사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홍보한 점, 산림청으로부터 대부한 국유림을 이 사건 행사에 제공한 점, 다른 언론사에서도 원고를 이 사건 행사 주최자로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 나) 이 사건 행사 당시 참가자들은 실제로 술을 마시고 달리기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행사 주최사인 원고와 H는 방역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 2) 이 사건 기사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어 게재된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참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고, 위와 같은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뉴스 기사를 작성, 게재하여 원고의 기업이미지 및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1) 이 사건 뉴스기사의 주요 내용은, “공기업인 원고가 정부의 방역지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행사를 ‘강행’하였는바, 이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앞장서서 준수해야 하는 공기업인 원고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피고 B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이

맥주를 마시는 사진과 참가자들의 단체사진을 첨부하고 해당 사진 아래 편에 사진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 2)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한 회사는 원고가 아닌 H이고, 원고는 이 사건 행사에 I 내 트레킹코스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뉴스기사에 첨부된 팝업창 사진 원본에도 이 사건 행사 주최자가 H라고 명시되어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뉴스기사에 팝업창 사진을 첨부하면서 이 사건 행사 주최자가 원고가 아닌 H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이 사건 팝업창 사진에 주최자로 명시된 H를 모자이크 처리하였고, 별도로 이 사건 행사 주최자가 원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 3)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고 장소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를 배포한 것은 이 사건 행사에 장소를 제공한 것을 기회로 원고가 운영하는 I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보도자료나 홍보자료를 보아도 원고가 주최자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들은 을 제4호증 동부지방산림청의 국유림 이용에 관한 신고 사례 질의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부지방산림청은 원고에게 국유림을 대부하는 기관에 불과할 뿐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표현도 원고가 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주최 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위 회신결과는 피고들이 이 사건 뉴스 기사를 작성, 게재할 당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에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신결과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하였다고 볼 수 없다.
- 4) 이 사건 뉴스기사에 첨부된 참가자들 단체사진은 이 사건 행사 당시에 아니라 2년 전에 개최된 동일한 행사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뉴스 기사를 작성할 당시 위 사진이 이 사건 행사 당시 사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확인해보지도 않았다.
- 5) 이 사건 행사 주최자인 H는 이 사건 행사 당시 참가자들 및 스태프들 모두에 대하여 체온측정,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은 방역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들은 을 제10호증의 영상을 근거로 원고와 H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영상에서도 맥주를 마시고 달리기를 시작하는 몇몇 참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바, 위 몇몇 참가자들의 행위를 근거로 원고와 H가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이 사건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6) 정부는 2020. 5. 6.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이 사건 행사 당시는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야외 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이 사건 뉴스 기사에 게재된 문구와 같이 야외 행사와 관련하여 ‘정부의 집단행사 자제 권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원고가 정부의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행사를 강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위법성 조각 여부

가. 관련 법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2010. 9. 9. 선고 2008다 842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는 원고가 아닌 H인데, 피고 B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은 이 사건 뉴스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별도로 이 사건 뉴스 기사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았고, 피고 회사도 이를 확인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들로서는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원고가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하였는지 여부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뉴스 기사에는 ‘정부의 집단행사 자제 권고를 무시’ 한다거나 ‘공기업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는바, 그 표현이나 이 사건 뉴스 기사의 작성 및 게재 경위, 그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뉴스기사에 기재된 허위사실의 내용과 표현 방법,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사회적 평가나 기업 이미지 저하의 정도, 원고의 영업활동에 미칠 영향, 불법행위 전후의 상황 및 그 밖에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인 피고 B는 2020. 9. 29.부터, 피고 주식회사 C는 2020. 8. 28.부터 각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생략 -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단5022165

‘아빠찬스를 활용’했다는 표현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며, 사실적시가 아니라 일종의 비평이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도 있다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들은 전 국회의원인 부친의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공천 세습’ 비판을 받던 원고가 자녀 교육에 ‘아빠 찬스’를 활용하였다며 원고 자녀의 전입이나 학생회장 선거 출마에 관련한 의혹을 보도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보도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비록 원고 자녀가 편법으로 전입했거나 학생회장 출마에 특혜를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보도의 주요 내용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아빠 찬스’라는 표현이 반드시 부정한 이익을 얻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종의 비평이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이 사건 기사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 J가 부당한 방법 또는 편법으로 Q초등학교로 전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아빠찬스’의 뜻이 반드시 분명하다고는 볼 수 없고, 부모의 지위나 영향력을 활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 가족의 이사 및 전학이 원고의 아버지인 E의 D 지위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하므로, 관점에 따라서는 이를 ‘아빠찬스’ 활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일종의 비평이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판결문

사 건 2020가단5022165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6. 2.
판 결 선 고 2021.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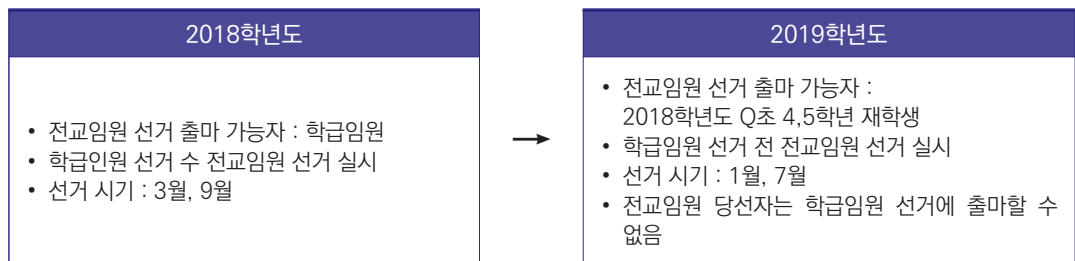
- 원고는 제20대 국회 D(2018. 7.~2020. 5.)을 지낸 E의 아들이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F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다.
- 피고 B는 일간지 'G'의 기자이고, 피고 C는 제20대 국회의원이었다.

나. 원고 가족의 주소이전

- 원고의 배우자 H과 자녀 I, J(이하 위 3인을 '원고 가족'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K에 거주하고 있었다. J은 2014. 3. 위 주소지 부근에 있는 L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원고는 사업상 이유 등으로 '의정부시 M'에서 거주하였다.
- 원고 가족은 2018. 2. 20. E의 주소지인 '의정부시 N'으로 이사하였고, J은 O초등학교로 전학하였다.
- E는 2018. 7. D으로 선출되어 서울 용산구 P 소재 D공관으로 이주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가족도 같은 곳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쳤고, J은 2018. 8. Q초등학교로 전학하였다. 한편 E 부부는 D공관 이주에 따른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H가 D공관의 세대주가 되었다.
- J는 2020. 2. Q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2020. 3. R중학교에 입학하였다.
- E의 D 임기가 만료되자 원고 가족은 2020. 6. 5. 종전 주소지인 '의정부시 N'로 이사하였고, J는 S중학교로 전학하였다.

다. J의 전교회장 당선

- J은 2018. 8. Q초등학교 전학 후 5학년 2학기 학급회장에 당선되었고, 2019. 1. 31. 실시된 전교임원 선거에서 전교회장으로 당선되었다.
- Q초등학교 전교임원 선거의 시기나 출마자격은 J이 당선된 위 선거(2019학년도 선거)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즉 전교회장의 경우 종전에는 6학년 진학 후 학급임원으로 선출된 학생만 출마할 수 있었으나, 위 선거부터는 (6학년 진학 예정인) 5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되었고, 선거 시기도 학급임원 선거 전으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기사 및 발언

○ 피고 B는 2020. 1. 20. 'G'에 『T』이라는 제목으로 아래 기사를 작성.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피고 B)

아버지인 E의 지역구인 F선거구에 4.15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해 '공천 세습' 비판을 받고 있는 A U정당 F선거구 상임부위원장이 자녀 교육에 '아빠찬스'를 활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E이 취임하자마자 A 부위원장이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아버지의 P에 있는 공관으로 이사해 살게 하고 아들을 의정부에서 전입시켜 인근 Q초등학교로 전학시킨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0일 G의 취재 결과 E의 며느리 H씨와 손자.손녀는 지난 2018년 7월 E 취임 직후 서울시 P에 있는 공관으로 전입했다. A 부위원장은 출마를 선언한 E의 지역구인 의정부에 남고 아내와 자녀들만 세대를 분리한 것이다. E 취임과 함께 의정부에서 공관으로 전학 온 손자 J군은 2019년 1월 Q초교 학생회장이 됐고 지난해 말 서울 지역 중학교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위원장은 11일 E이 내리 6선을 한 F선거구 출마를 선언했고 16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A 부위원장은 출마를 선언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천 세습과 관련해서 "아버지의 길은 걷되 아빠찬스는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E이 D에 취임하자마자 아내와 아들을 아버지의 D 공관으로 이사시켜 아빠찬스를 쓴 것이다.

이 때문에 자녀 교육을 위해 A 부위원장이 D 공관을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E 측은 "며느리가 시부모(E 내외)를 모시기 위해 공관으로 전입했고 아이들도 전입했다"고 밝혔다. A 부위원장도 "아들이 의정부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아버님이 공관으로 가시면서 데려갔다"며 "저는 의정부에 있고 아들은 공관 앞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아빠찬스를 활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E 측은 "(D 임기가 끝나면) 가족 모두 의정부 자택으로 복귀하겠다"고 답변했다. A 부위원장은 "(D 임기 만료 후) 아이들을 다시 의정부로 전학시키겠다"고 밝혔다.

○ 피고 C는 2020. 1. 21. 국회 본관에서 열린 V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이 사건 발언(피고 C)

E 관련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과 추가할 사항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의 손자와 며느리 H씨가 2018년 7월 P에 있는 공관으로 전입했다고 한다.

①12) D실에 확인하니까 E의 주민등록은 의정부로 되어있다고 한다. 며느리가 굳이 공관으로 전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방증이다. 국유재산인 D 공관 세대주가 누구로 되어 있어야 하는가? 며느리로 되어 있어야 하나? E이 아닌 며느리로 되어있다고 해서 공관에 세대주 자료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거절했다.

12) 번호는 편의상 붙인 것이다.

그 이후에 E의 손자는 Q초등학교로 전학했는데, Q초등학교는 D W 공관 옆이고 40억대 호가하는 아파트들이 즐비한 초등학교이다. ② E 손자가 전학한 후에 이 학교 전교임원 선거 시기가 겨울방학 중인 1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공고가 났다. 본래 3월과 9월에 실시하던 게 작년에만 1월과 7월에 선거하는 것으로 갑자기 선거실시가 당겨졌다. 그래서 선거자격도 종전에는 학급임원만 출마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4, 5학년 학생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고 규정을 바꿨다. 그래서 출마자격이 없던 J 군이 갑자기 개정된 학칙에 따라서 출마했고 당선되었다고 한다. E 손자는 전교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X협회 영어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수상했다고 한다. 미국 대회에 나가서 스포츠를 쌓았고 현재는 서울 지역의 중학교에 배정되었다고 한다. ③ 인근 Y중학교로 진학한 걸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해도 학교, 교육청, D실 전부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 Y중학교 진학 여부에 대해서 E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학교 전교회장은 2016년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전부 6학년 학생이 했으나 2019년 1학기 회장만 5학년이던 J 군이 했다. ④ 금년 1월에도 전교임원 선거가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선거알림 교육통신이 알려져야 하나 금년 1월에는 선거공고가 올라와있지 않다고 한다. E 손자를 위한 일회성 한번만 선거규칙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 H은 연로해지는 시부모 E 부부를 모시기 위해 2018. 2. 자녀들과 함께 E 부부가 거주하는 의정부시로 이사하였다가, E이 D이 된 후에는 D공관으로 이사하였다. 이에 따라 J은 D공관 인근의 Q초등학교로 자연스럽게 배정되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 B는 원고가 자녀 교육에 악용할 목적으로 원고 가족만 D공관으로 이사하게 함으로써 편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J을 Q초등학교에 전학시켰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위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때를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的重要内容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등 참조).

2) 불법행위 성립 여부

이 사건 기사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기사에 허위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E의 D 취입 후 원고 가족이 D공관으로 이사했고 J이 Q초등학교로 전학한 점, 이와 달리 원고는 여전히 의정부시에 거주한 점 등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 앞서 본 원고 가족의 거주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족은 E 부부와 함께 거주하다가 E의 D 취입과 함께 자연스럽게 D공관으로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J이 부당한 방법 또는 편법으로 Q초등학교로 전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아빠찬스’의 뜻이 반드시 분명하다고는 볼 수 없고, 부모의 지위나 영향력을 활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 가족의 이사 및 전학이 원고의 아버지인 E의 D 지위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하므로, 관점에 따라서는 이를 ‘아빠찬스’ 활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일종의 비평이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 피고 B는 ‘논란이 예상된다’, ‘지적도 나온다’ 등으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 측의 해명도 균형 있게 실려 있어,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가 원고 가족의 이사나 J의 전학에 부정한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인식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 가족을 이사하도록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암시의 방법으로 적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공직자 또는 공직선거 출마예정자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 수행이라는 언론보도의 특성, 앞서 본 사실관계, 피고 B의 보도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발언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발언 부분	원고 주장
① (주민등록)	E이 주민등록만 이전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D공관에서 거주했는데도, 마치 E이 D공관에 거주하지 않는데 원고 가족만 D공관으로 주민 등록을 이전하여 J을 Q초등학교로 전학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 적시
② (전교회장 선거)	J은 5학년 2학기 학급회장이었으므로 개정 전 선거규정에 의하더라도 전교회장 출마자격이 있었는데도, 개정 전 선거규정에 의하면 출마자격이 없는 J을 위해 선거규정이 변경되고 J이 변경된 선거규정에 따라 출마해서 당선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 적시
③ (Y중 진학)	J이 Y중에 진학한 사실이 없는데도, Y중에 진학하였다고 허위사실 적시
④ (선거공고)	Q초등학교는 2020. 1. 14. 전교임원 선거를 공지하였는데도, 마치 J이 전교회장으로 당선된 2019. 1.에만 일회성 특례로 선거규정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 적시

나. 판단

이 사건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부분(주민등록)

적시된 주요 사실 즉, 원고 가족이 E 부부와 함께 D공관으로 이사하였으며, E은 D공관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점은 모두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나아가 피고 C가 원고 주장처럼 E이 D공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 C가 ① 부분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② 부분(전교회장 선거)

- 적시된 주요 사실 즉, J 전학 후에 실시된 2019년 1학기 전교회장 선거에서 선거 시기나 출마자격이 종전과는 달라졌다는 점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 다만 “출마자격이 없던 J 군이 갑자기 개정된 학칙에 따라서 출마했고 당선되었다”는 부분은 다소 사실과는 다르다. 즉 종전 규정에 따르면 2019년 1학기 전교회장은 2019. 3. 개학 후 6학년 학급임원 선거를 통해 학급회장으로 선출되어야 출마자격이 부여되었으나, 개정 규정에 따르면 2019. 1. 6학년 진학 예정인 5학년 학생 전원에게 출마자격을 부여하여 선거를 하게 된다. 결국 종전 규정에 따르면 J은 2019. 3. 학급임원 선거에서 학급회장으로 선출되는지에 따라 2019년 1학기 전교회장 출마자격 유무가 결정되게 되므로, “종전 규정에 따르면 출마자격이 없었다”는 표현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오히려 선거가 이루어진 2019. 1. 시점에서 J은 5학년 2학기 학급회장이었으므로, 출마자격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선거규정 개정에 따라 선거 시기까지 달라졌으므로, 이러한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다).

- 그러나 위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 C에게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 부분 발언은 D 손자에게 전교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혜가 주어졌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인과관계 유무와는 관계없이 선거규정 변경 후 최초로 실시된 선거에서 J이 전교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는 점, 피고 C 측은 이 사건 발언에 앞서 Q초등학교 교장에게 'J이 출마자격이 없었는데 규칙 변경으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하여 '새학년도 학급임원 선출 이전에 해당 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출마기회를 제공한 결과 학급임원이 아닌 J도 출마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던 점(을나 제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로서는 위와 같은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③ 부분(Y중 진학)

피고 C는 J이 Y중에 진학한 것으로 보인다며 E에게 Y중 진학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을 뿐, J이 Y중에 진학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부분(선거공고)

- Q초등학교 홈페이지에는 2020. 1. 14. '2020학년도 제1학기 전교임원 선거 안내'가 공지되었으므로(을나 제3호증), 피고 C의 이 부분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지 않는다.

- 다만 피고 C는 선거규정 개정이 J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일회성 변경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이를 단정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원고는 2020. 1. 21.자 'G' 기사(갑 제2호증)를 통하여 이 사건 발언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사에는 피고 C의 이 부분 발언 소개 다음에 "하지만 확인 결과 Q초는 직전 선거(12월 26일)보다 20여 일 늦은 이달 14일 전교임원 선거공고를 올렸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공직자의 특혜의혹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다소 세세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이 부분 발언만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피고 C에게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합565299

‘갑질을 자행’하였다는 표현도 문맥에 따라 사실적 주장이 될 수 있다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는 교수인 원고가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수협의회 공용 계정 그룹웨어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상식 이하의 일을 자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원고는 기사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 언론사는 갑질을 자행했다는 등의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갑질이라는 표현이 보도의 문맥을 고려할 때 증거에 의해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법원은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갑질’이란 사전적 의미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을 말한다(네이버. 다음 어학사전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갑질 … 등 상식 이하의 일을 자행’하였다는 문구를 사용하며 단정적인 어조로 보도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직원들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을 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등 함께 사용된 수식어구 및 문맥,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증거에 의하여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문

사	건	2020가합565299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21. 7. 7.
판결선고		2021. 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C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D의 C자 기사를 삭제하고 기사를 삭제한 사실과 판결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정정보도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E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소속 교수로 2019년 E대학교 교수협의회¹³⁾ 대표 의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 B은 인터넷 언론사 D(발행인 F)의 기자 및 편집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나. 피고는 C 위 D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G’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보도하였는데, 이 사건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3) E대학교 학칙 등에 따라 설치되는 E대학교 교수협의회는 E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을 회원으로 하고, 위 협의회 내에는 임기 2년의 집행위원 7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행위원회가 구성되며, 집행위원회에는 공동의장 2인을 두어 공동의장 중 1인을 대표의장으로 하되, 임기 2년 중 처음 1년은 연장자가, 다음 1년은 다른 자가 대표의장이 된다.

〈G〉

(... 중략...)

E대의 'H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학과 모 교수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6-2017년 E대 모 교수의 음주운전 사고를 이 당시 징계위가 교육공무원 징계양형 기준을 따르지 않고 감봉으로 끝낸 것이다. 징계양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 감사사항이며, 징계양형을 지키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교육부에서 법인으로 징계위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즉 바로 중국학과 모 교수의 양형을 이 사례를 근거로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학교측 소식에 의하면 현재 학교본부측의 'H들'로 통하는 모 교수가 징계위에 참여할 것이 예상된다고 한다. I 총장의 측근 보직교수였던 중국학과 모교수의 징계를 결정하는 교원징계위원을 I 총장이 공정한 인사로 선임할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이제 대학가는 긴긴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늘 그렇듯이 방중에는 학교본부측의 대대적인 인사이드가 있다. 껌직을 하고 있는 처장직들을 비롯 새로운 인물들이 처장직을 맡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I 총장에 대한 여론이 비난일색인 가운데 누가 학교본부 처장직을 맡을지 안개국면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 교수협의회 의장이 처장직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갑질과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협 그룹웨어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상식 이하의 일을 자행한 전직 교협 의장이 처장으로 발령될 경우 학교는 또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지 명약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종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갑질과 ②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협 그룹웨어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상식 이하의 일을 자행한...(생략)' 등의 원고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기사를 작성.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를 E대 학교당국의 'H들' 중 한 명이라고 모욕하였다. 피고는 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명예훼손에 대한 민법 제764조에 따른 처분으로서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고, D 홈페이지에 기사를 삭제한 사실과 함께 이 사건 판결문을 게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직원에 대한 갑질’ 등의 표현은 의견표명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기사 중 ‘직원에 대한 갑질’ 및 ‘그룹웨어 비밀번호 변경’ 등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하여 보도한 것이거나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민법 제764조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명예훼손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 피해자의 특정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원고에 대해 “전 교수협의회 의장”으로 지칭하면서 원고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갑질과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협 그룹웨어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상식 이하의 일을 자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덧붙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에서 대상자를 특정한 방법(전 교수협의회 의장)과 원고가 맡았던 직책과의 연관성(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년도의 교수협의회 의장이었다), 교수협의회 그룹웨어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등 원고와 연관될 수 있는 소문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원고 주변 사람들 및 E대 교수협의회 회원 등의 관련자들로서는 이 사건 기사에서 말하는 ‘전 교수협의회 의장’이 원고를 지칭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에서 피해자인 원고는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관련법리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출판 등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한편,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직원에 대한 갑질’ 부분

‘갑질’이란 사전적 의미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을 말한다(네이버. 다음 어학사전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갑질 … 등 상식 이하의 일을 자행’하였다는 문구를 사용하며 단정적인 어조로 보도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직원들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을 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경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등 함께 사용된 수식어구 및 문맥,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증거에 의하여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행하였다는 ‘갑질’에 대해 피고는 2020. 11. 11.자 준비서면 등을 통해 ‘원고가 E대학교 감사실장으로 발령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실 직원들을 찾아가 자신이 앞으로 감사실장이 될 것이니 자료를 준비하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혔고, 이에 관하여 증인 J은 ‘원고가 2020. 5.경 감사실장으로 임명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실에 자료준비를 지시한 부분과 직원의 기강을 잡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학교 총장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감사실장으로 임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피해당사자로 알려진 직원 2명의 부서와 직책, 실명을 특정하였다. 이로써 피고로서는 ‘원고가 2020. 5.경 감사실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지시 및 위압적 분위기 조성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기사와 관련된 원고의 행위를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로서는 위 사실의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그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밝힌 사실관계가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소송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위 피고 주장에 대한 허위성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룹웨어 비밀번호 변경’ 부분

원고가 E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수협의회 의장, 집행위원, 간사 등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이메일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교수협의회 그룹웨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보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전 교수협의회 의장이 교협 그룹웨어 비밀번호를 바꾸었다’고 적시한 취지는 원고가 교수협의회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특정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가 위 공용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그 뿐만 아니라 변경의 대상이 그룹웨어 비밀번호인지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인지 여부는 비교적 사소한 사실로 볼 수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교협 그룹웨어 비밀번호를 바꾸었다고 보도하였을 뿐 그룹웨어가 무엇인지 여부 또는 그룹웨어 비밀번호 변경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나 그 영향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그룹웨어’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 기사의 중요 부분이라 가정하더라도, 언론보도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을 3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는 언론사 기자로서 E대학교 내의 교원 징계절차, 교원 인사 등에 대해 비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 전 학교 관계자들에게 취재 및 조사를 하였던 점, E대 내부 교원, 더 나아가서는 교수협의회 임원진이 아닌 이상 교수협의회 내부 그룹웨어 등의 별도 시스템, 계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기는 어려워 이에 관해 혼동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2) 민법 제764조에 따른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민법 제76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덧붙여 피고는 인터넷 언론사인 D의 발행인이 아닌 편집인에 불과하여 D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거나 기사를 삭제한 사실과 판결문을 게시하는 방식의 정정보도를 할 책임과 권한이 없어 보인다).

나.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를 ‘E대의 H들’ 중 한 명으로 표현하여 모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기사 3면에서 “E대의 H들?”이라고 진하게 표시된 소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래쪽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E대학교 중국학과 소속 모 교수에 대한 징계조치와 관련하여 E대학교의 총장이 자신의 측근인 교수 중 한 명을 징계위에 참석시켜 징계양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현재 학교본부 측의 ‘H들’로 통하는 모 교수가 징계위에 참여할 것이 예상된다”고 한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징계위 구성 관련 내용 중에는 ‘모 교수’라는 것 외에 두문자, 이니셜, 직책 등 ‘H들’로 지칭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특정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사에서 위 징계위 구성 관련 내용이 끝난 후에 “이제 대학가는 긴긴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늘 그렇듯이 방중에는 학교본부측의 대대적인 인사이드가 있다. 겸직을 하고 있는 처장직들을 비롯 새로운 인물들이 처장직을 맡게 될 예정이다”라며 학교본부 처장직 임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사의 문맥이 전환된 후에야 원고를 지칭하는 ‘전 교수협의회 의장’ 등의 표현이 나오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사의 구성, 문맥, 연결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모욕의 피해자 즉, ‘E대의 H들로 통하는 모교수’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성폭력범죄 보도에 있어 범죄의 발생일시, 장소, 구체적인 범행내용 등 피해자를 특정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보도하는 것은 피해자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는 특정 회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였는데, 피해자의 실명은 익명처리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한 일시, 피해자의 당시 지위,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등을 함께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기사 삭제 가져분을 요청하였고 법원의 조정을갈음하는결정에 따라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다. 원고는 이후 피고가 성폭력피해자인 원고의 신원이 특정되게 하고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비난 발언까지 포함시킨 이 사건 보도를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기사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같은 업계에 있거나 피해자의 지인, 주변인이 피해자에 관한 보도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인권보도준칙의 세부권고기준 실천요강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기사가 원고의 명예와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고, 원고를 특정하게 할 내용을 삭제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점 등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며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판결요지]

비록 이 사건 기사에서 비록 원고에 대하여 'B씨'라는 이니셜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기사에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구체적인 범행내용까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인 원고가 그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여기에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비록 피해자이지만 사회적 편견이나 인식 등으로 그러한 피해 사실 자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충분히 사생활 비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원고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결문 14)

사	건	2020가단291633 손해배상(기)		
원	고	C		
피	고	주식회사 D		
변	론	종	결	2021. 5. 21.
판	결	선	고	2021. 9.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2021. 9.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REDACTED] (주)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REDACTED] 입사한 직원으로, [REDACTED] 사내 성폭력범죄(이하 '이 사건 성폭력범죄'라 한다)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잡지 발행 및 판매업, 인터넷 사업 등을 목적으로

14) 성폭력범죄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해 법원 판결문 내용 중 피해자 신상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된 부분을 추가로 블라인드 처리하였음

설립된 언론사로 매주 언론지인 'F'을 발행하고, 'F' 인터넷 사이트에 기사 등을 게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20. 6. 12. 14:57 위 인터넷 사이트에 'G'이라는 제목의 별지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합니다)를 게재하고, 2020. 6. 15. 동일 내용의 기사를 'H'이라는 제목의 '커버스토리'로 하여 'F(I)'를 발행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 중 이 사건 성폭력범죄나 원고와 관련되어 보이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 신입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력 사건을 일으켜 해고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사건은 지난해 ■■■■■ 시작됐다. 당시 ■■■■■ 술에 취한 신입직원 B씨에게 성폭력 ■■■■■ 을 저질렀다고 한다. 사건 다음 날 B씨는 곧장 경찰에 A씨를 신고하고 고소했다. ■■■■■ A씨는 ■■■■■ 주요 책임자였다. 사건 직후인 2019년 3월부터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내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회사는 해당사건에 대한 사내 조사를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지난해 5월이 되어서야 시작했다.
- 회사는 내부적으로 감사실 중심의 조사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해 7월 10일 A씨를 징계해직 조치했다. 경찰은 이 성폭력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해 10월 검찰이 기소해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사내 조사 과정에서 “해당 행위(B씨와의 신체접촉 등)가 이었던 것은 맞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지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입사원 B씨는 “합의가 아니라 강제로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사측은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 신입사원을 상대로 연수 과정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A씨를 해고했다.
- A씨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오히려 내가 피해자이고 B씨는 가해자다. 법원 판단 전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A씨는 또 자신을 징계할 경우 B씨에 대한 징계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을 포함한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대표이사에게 밝혔다고 한다.
- ■■■■■
- A씨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징계처분 및 신입사원 B씨 보호에 나섰던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 제기한 의혹들을 현 노조 측이 그대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 소외 회사는 총 사원수 200명 정도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명 입사한 신입사원 중 여성은 원고를 포함하여 2명뿐이었고, 다른 여직원은 ■■■■■명 의원 면직으로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다.

마. 이 사건 기사의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 후 원고는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와 같은 기사

계재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저녁과 같은 달 15일 피고에게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원고의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알리고 기사 삭제를 요청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합 50429 기사 게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같은 해 7. 28. ‘피고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별지와 같은 기사의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일당 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기사 중 위 결정에서 삭제를 명한 부분을 모두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기사의 주제는 소외 회사와 ████████경 새로 출범한 소회 회사 현 노조와의 갈등 및 원인에 대한 것임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기사의 주제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원고임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구체적인 범행 시기, 장소 및 범행내용까지 적시하고, 나아가 가해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나 비난 발언도 포함시킨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전파성 등이 매우 강한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에서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그 피해자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 ██████████ ‘A씨는 자신을 징계할 경우 B씨에 대한 징계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 ██████████ ‘술에 취한 신입직원 B씨에게 성폭력 ██████████ 을 저질렀다고 한다’, ██████████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REDACTED] 소의 회사의 신입사원 중 여성은 원고를 포함하여 2명뿐이었는데, 그나마 다른 여직원은 [REDACTED] 퇴사하여 가해자인 A씨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동시 징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당시에는 원고가 유일한 [REDACTED] 신입 여직원이었던 점, 명예훼손 등에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무관한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업계에 있거나, 피해자의 지인, 주변인이 해당 보도가 피해자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한 점, 이 사건 기사 게재 후 원고는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기사에서 비록 원고에 대하여 'B씨'라는 이니셜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기사에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일시 [REDACTED] [REDACTED] 및 장소 [REDACTED], 구체적인 범행내용 [REDACTED] [REDACTED]까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인 원고가 그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여기에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비록 피해자이지만 사회적 편견이나 인식 등으로 그러한 피해 사실 자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한 공무원 등에 의한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24조 참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항 제1항에서도 '언론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J협회가 제정한 인권보호 준칙의 세부권고기준 실천요강에서도 '언론은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권고하고 있는 점,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충분히 사생활

비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원고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사는 공공 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소외 회사에서 신입 여사원에 대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징계되고된 자가 노조의 영향력을 업고 복직을 도모하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가해자인 [REDACTED] A씨'의 비리를 드러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을 추지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언급된 것뿐이고,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보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해행위를 언급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고, 선정적인 표현을 일체 사용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상당성을 갖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내용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소외 회사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징계되고된 사람이 새로 출범한 노조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사측에 압력을 가하여 복직을 도모하고 있고, 현노조는 이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소외 회사의 상황을 알리고 이를 고발하는 취지로 그 공익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사의 주제나 내용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에서 소외 회사 노조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복직을 도모하려는 사람이 사내 성폭력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서 징계되고된 사람이라는 점만 부각되면 충분하고, 그 피해자까지 드러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이는 점, 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이 사건 기사의 목적이나 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고, 반면 그와 같은 내용의 공개로 원고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는 중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실제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합50429호 가처분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기사 중 원고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그 보도 내용이나 성질, 표현 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갖추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¹⁵⁾.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매체들의 특성, 피고도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던 점, 이 사건 기사 게재 이후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6.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생략 -

15) 다만, 이 사건 기사에서 비판과 고발의 대상이 된 A씨나 소외 회사 현 노조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나 목적 등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 등이 인정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커 보인다.

‘파렴치한 인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등의 발언을 인용 보도하였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비난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는 시의원인 원고가 건설자재를 팔아먹으려는 건설업자에 불과하고, 원고의 아들이 부정하게 농지를 매입하게 하고 원고의 배우자가 매수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도록 하는 등 시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11차례에 걸쳐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보도가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보도가 대체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보도내용 중 원고에 대해 ‘나쁜 생계형 시의원’, ‘파렴치한 인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민 발언을 인용한 부분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원고의 행위에 비난의 여지가 있는 점, 수사적 과장이나 비유적 표현에 불과한 점, 공적 존재인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의혹 또는 문제제기 과정에서 위와 같이 표현하게 된 점 등을 들어 언론자유와 명예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명예훼손 판단

… 이 사건 각 기사 중 중요 부분 중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된 부분은 대부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인다.

… 설령 이 사건 각 기사의 일부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공적 관심 사안을 그 내용으로 하거나 시의원으로서 공적 존재인 원고에 대한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고, 이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점, 위와 같은 공적 사안이나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안에 대한 의혹 또는 문제기기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에 대한 사회 구성원 사이에 해당 정보의 진위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표명과 건전한 토론을 활성화 시켜 이에 기초한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건전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한 점, … 주민들의 제보 및 관계자들의 진술 청취, 공적 자료 열람 등 자료 조사에 의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에 따른 취재에 기초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앞서 본 공적 목적 외에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채 원고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원고가 피고측에 충분한 반박자료를 제공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D 및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모욕 판단

…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지위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비난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및 취지, 목적에 비추어 그 내용이 감시, 비판, 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나 언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에 법적 책임을 부담케 함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기사의 전체 내용을 고려한 앞서 본 각 표현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사의 표현이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20가단22561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9년경 C시 시의원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이며, D은 피고 소속 기자이다.
- D은 11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보도내용 기재 각 기사(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발행하는 'E'와 홈페이지에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였다.
- 원고는 D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D은 2020. 8. 25.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에 기하여 '죄가안됨'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대진고등 법원 청주재판부 2020초재272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2. 4.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 ① 2019. 4. 21.자 기사 : F위원회 의원의 제보 및 제3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
- ② 2019. 5. 19.자 기사 : C시 사회단체연합에 속해 있는 환경단체를 취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
- ③ 2019. 5. 31.자 기사 : D이 C시 사무국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역과 실제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이 상이하여 사실에 입각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
- ④ 2019. 6. 3.자 기사 : 2019. 4. 21.자 기사와 2019. 5. 31.자 기사에 대하여 시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
- ⑤ 2019. 6. 7.자 기사 : 원고의 아들 명의로 농지가 구입된 점은 원고의 고소장에도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16년경 G위원회에 위원으로 소속된 점, 8월경 C시가 군도 H호선과 관련하여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한 점을 토대로 C시청 및 C시의회가 제출한 자료에 기해 기사 작성한 것으로 판단
- ⑥ 2019. 6. 13.자 기사 : 원고가 G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점, 제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
- ⑦ 2019. 6. 20.자 기사 : 2019. 6. 7.자 및 2019. 6. 13.자 기사와 이어지는 기사로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에 기초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
- ⑧ 2019. 6. 28.자 기사 : 마을 주민의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
- ⑨ 2019. 6. 29.자 기사 : 원고가 윤리위에 회부되었고, C시 시의원 11명을 고소한 점은 사실로 사실에 입각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

- ⑩ 2019. 7. 5.자 기사 : C시 시의원 11명을 고소한 점, O에 자재를 납품한 점을 사실로 사실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
- ⑪ 2019. 7. 31.자 기사 : 석면조사현장과 원고가 간 주차현장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 현장을 이탈한 점을 사실로 인정하고, 당시 시청측 및 환경단체 등 20명이 석면조사에 참여한 것은 사실로 사실에 입각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2 “원고 주장 보도 내용”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고 발행의 주간지인 E과 홈페이지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 보도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구체적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19. 4. 21.자 기사

피고는 원고를 형식상 시의원의 지위에 있으나 실제로는 건설자재를 팔아먹으려는 건재상업자에 불과하다며 폄훼하고, 원고가 권한을 남용하여 건설자재를 팔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건설현장에 무조건적인 트집을 잡거나 건설업자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4. 21.자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② 2019. 5. 19.자 기사

원고는 C시의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의회 임시회의 사전발언 통하여 C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C시가 적극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발파석 등이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 요청하는 등 정당한 직무를 행한 것임에도 피고는 ‘연합회 관계자’의 말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5. 19.자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였다.

③ 2019. 5. 31.자 기사

원고는 시의원으로서 시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이를 공개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C시의회도 이를 받아들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한 것이며, 원고는 시의원 I위원장의 직무로 시의회 직원 또는 관련 공무원들이나 기자들과의 간담회 개최한 것일 뿐임에도 피고는 내로남불이나 파렴치한 등으로 원고를 표현하고, 원고가 허위 주장에 따른 공개사과를 한 사실이 없고 컨벤션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건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허위주장에 대한 공개사과를 했거나 건자재가 납품된 업체가 운영하는 장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무추진비를 낭비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2019. 5. 31.자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④ 2019. 6. 3.자 기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건축자재를 팔아먹으려는 나쁜 생계형 시의원’이라고 표현하거나 ‘원고가 밥 먹고 술 먹는데 시민혈세를 물 쓰듯 썼다. 주민을 위한 시의원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원고가 시민들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남발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2019. 6. 3.자 기사를 작성, 게재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⑤ 2019. 6. 7.자 기사

원고 아들의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원고가 원고의 시의원으로서의 지위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군도H호선’은 2003년경 도시계획이 이미 이루어져 토지이용계획 확인인을 통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정보임에도 원고가 투기 목적으로 시의원의 지위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아들 명의로 군도H호선 상의 농지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J시 K 시의원’의 사건을 기재하여 원고가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통해 농지를 매입하고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한 것처럼 비취지도록 2019. 6. 7.자 기사를 작성,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를 모욕하였다.

⑥ 2019. 6. 13.자 기사

C시 G위원회의 위원은 C시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안에 관하여만 알 수 있고, ‘L’ 후보지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소관사항이므로 C시 G위원회 위원들이 사전에 미리 알 수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C시 G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배우자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게재하고, 관련법령 및 조례 내용의 확인 없이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원고의 배우자가 매수한 토지가 ‘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임에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 말을 사육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고 보도하여 원고가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2019. 6. 13.자 기사를 작성,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고의 배우자가 위 토지를 매입할 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C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도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의 사육이 허용되는데, 원고 배우자는 애완동물인 ‘말’의 사육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는 마치 원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 및 재산변동사항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한 것처럼 ‘원고 본인과 배우자 등의 재산등록사항 및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공개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표현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⑦ 2019. 6. 20.자 기사

원고가 C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공공정보를 이용하여 L 토지를 매입하거나 배우자와 아들의 이름을 차용하여 위 토지들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앞선 기사와 같은 취지로 기사를 보도하면서 마치 원고가 시의원의 지위에서 습득한 공공정보를 이용하고 배우자와 아들 명의를 차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원고를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던 M과 비교하는 2019. 6. 20.자 기사를 작성,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를 모욕하였다.

⑧ 2019. 6. 28.자 기사

원고는 농민들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긴 사실이 없고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여 말을 타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마을 주민이 원고에 대하여 인터뷰나 제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마치 마을 주민들이 원고에 대하여 제보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고, 원고가 시의원으로서 C시의 유기농법 농사의 관리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관련 공무원을 의회로 불러 민원이 있음을 고지하고 유기농법 농사 지역에 대하여 시료 채취 및 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가 농민을 우습게보고 특정 유기농법인 및 농민을 음해하였으며 오히려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2019. 6. 28.자 기사를 작성, 게재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였다.

⑨ 2021. 6. 29.자 기사

원고와 당적을 달리하는 11명의 시의원들이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서 윤리 위원회에 징계조치를 요구하여 원고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징계를 요구한 것이고, 오히려 원고가 위 11명의 시의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원고와 당적을 같이하는 시의원들이 다시 위 11명의 시의원들에 대해 윤리 위원회에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나 C시의회 사무국에 확인하여 그 진위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근거 없이 “지역사회의 눈총은 계속되고 있다”, “다수의 주민을 고소, 고발한 파렴치한 인간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백배사죄해도 용서가 안 되는데 저 잘났다는 식의 발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동료 시의원들을 겁박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 “C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깨끗하게 죄를 인정하고 자진사퇴하는 것이”라고 시민의 말을 빌리는 것처럼 표현하는 2021. 6. 29.자 기사를 작성, 게재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였다.

⑩ 2019. 7. 5.자 기사

피고는 원고가 시의원들을 무고로 고소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또다시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또 다시 윤리위에 회부되어야 할 당사자” 라거나 원고가 국회의원과 함께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원고가 지위를 남용하거나 공공의 정보를 이용하여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학교 후배로서 C시 O 건축공사의 시공업체의 공사반장으로 일하는 N 요청에 따라 건자재 납품을 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일도 없고 수사 받지도 않았음에도 “현재 A 의원은 별건 사건으로 C시 공공의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해온 의혹들이 나타나고 있다”거나 원고가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급공사 현장인 C시 O 건축공사의 시공업체를 압박하여 건자재를 납품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2019. 7. 5.자 기사를 작성, 게재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⑪ 2019. 7. 31.자 기사

기사에서 언급된 석면조사 당시 원고가 날씨 등의 현장 상황으로 다른 날을 택하여 조사를 시행하자는 취지로 관계자들에게 이야기 했으나 위 의견이 묵살된 채 조사가 강행되었고, 이에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로 차를 주차해 둔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묵인한 채 원고가 억지주장을 하여 혈세를 들여 불필요한 석면조사를 하게하고 정작 조사 당일 본인은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2019. 7. 31.자 기사를 작성,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내용을 제보 받거나 공적인 자료의 열람 등 적절한 취재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고, 내용도 허위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설령 기자의 사견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단

(1)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는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참조).

- 언론·출판 등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 22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밝힌 사실관계가 허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사의 중요 부분 중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된 부분은 대부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에 대한 허위성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설령 이 사건 각 기사의 일부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각 기사의 전체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기사는 시의원인 원고가 그 지위를 남용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한 것에 대한 비판이나 그에 대한 우려 등에 관한 공적 관심 사안을 그 내용으로 하거나 시의원으로서 공적 존재인 원고에 대한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고, 이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점, 위와 같은 공적 사안이나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안에 대한 의혹 또는 문제기기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에 대한 사회 구성원 사이에 해당 정보의 진위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표명과 건전한 토론을 활성화 시켜 이에 기초한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건전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한 점, D은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주민들의 제보 및 관계자들의 진술 청취, 공적 자료 열람 등 자료 조사에 의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에 따른 취재에 기초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앞서 본 공적 목적 외에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채 원고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원고가 피고측에 충분한 반박자료를 제공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D 및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의 명예훼손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표현행위의 내용, 형식뿐 아니라 표현행위가 행해진 정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기사 중 “(2019. 5. 19.자 기사) 연합회관계자는 ‘… A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 배반적 행위를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2019. 5. 31.자 기사) 내로남불의 시의원은 누구인가?”, “(2019. 6. 3.자 기사) 또 한 시민은 ‘… 건축자재를 팔아먹으려고 시의원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나쁜 생계형 시의원’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들이 말한 한 착한 생계형 시의원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욕하는 격이다. …’고 일갈했다”, “(2019. 6. 29.자 기사) 이 모습을 지켜 본 한 시민은 ‘내가 알고 있다. A 시의원은 다수의 주민을 고소, 고발한 파렴치한 인간이다, 저 잘났다 식의 발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2019. 7. 5.자 기사) ○○○ 전 C시장은 ‘... 시의회 내에서의 일을 고소로 법정에서 싸운다... 명예훼손? 무슨 명예가 있다고...’라고 꼬집었다”라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하거나 비하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위와 같이 문제가 되는 일부 표현은 수사적인 과장이나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거나 제3자의 의견을 인용 또는 풍문을 표현한 것으로 이는 공적 사안 또는 공적 존재인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의혹 또는 문제제기 및 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표현하게 된 것인 점, 더구나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 중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지위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비난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및 취지, 목적에 비추어 그 내용이 감시, 비판, 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나 언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에 법적 책임을 부담케 함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기사의 전체 내용을 고려한 앞서 본 각 표현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사의 표현이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모욕의 점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생략 -

1-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0. 14. 선고 2020가합12890

원고가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죄목을 열거하였을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피고는 요양병원과 병원관계자의 갈등으로 원고 조합 관계자들이 업무상 배임, 사기,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발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원고 조합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피고를 상대로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언론중재법상 규정된 권리로서 반론보도와 추후보도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원고들이 고소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죄목을 열거하였을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독자들에게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이 사건 기사는 원고들이 피고 C 등에 의해 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고소된 각 죄명을 열거하였을 뿐이며,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 원고 B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원고 B가 분쟁 상대방인 피고 C 등에 의해 고소당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기사가 독자들에게 원고 B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법적 공방 장기화 될 듯’, ‘법적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고 있다’라는 표현은 원고 B와 피고 C, D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사정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기사 중 ‘부당운영을 규탄하기 위한’이라는 표현은 피고 C 등이 신고한 옥외집회의 목적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관한 부연설명도 없으므로, 이러한 표현만으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20가합12890 정정보도		
원	고	1. A조합 2. B		
피	고	1. C 2. D 3. E		
변	론	종	결	2021. 6. 10.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 가.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F언론 1면의 뉴스 부문 첫 부분에 24시간 동안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 및 별지 2 기재 추후 보도문을 각 게재하되, 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2) 인터넷신문(인터넷주소 1 생략) 초기 화면의 뉴스 부문 첫 부분에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 및 별지 2 기재 추후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여 이를 72시간 동안 게재하며, 이후로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이후로는 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나. 피고 E이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가.항 기재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30%를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 E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E이 F언론에 제1의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의 가항 기재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피고 E은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F언론 및 인터넷 F언론(인터넷주소 1 생략)의 발행인이자 F언론 소속의 기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E의 보도 대상이 된 자들이다.
- 나. 피고 E은 2020. 8. 6. 인터넷 F언론(인터넷주소 1 생략)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시하였다.

G

- H요양병원 갈등, 법적 분쟁으로
- 고발당한 전) 병원관계자 무혐의(불기소)로 결정나자 역고발
- 병원측, 항고로 맞대응 법적 공방 장기화 될 듯

B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A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이 전) 병원관계자 4명에 대한 각종 고발건에 대해 순천지청에서 결국 무혐의 처리했다.

또한, 병원으로부터 고발당해 무혐의 처리된 이들이 B 이사장과 I씨를 다시 고발해 이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H병원은 전) 병원관계자 4명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인부정 사용,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등 총 7건을 무더기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순천지청은 지난 3월 10일 이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무혐의를 받아 전) 병원 관계자 C, D 2인은 B 이사장과 당시 병원이사였던 I씨를 업무상배임,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배임수재,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및 동행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선거중립, 임원선출규정), 변호사법위반(겸직금지)으로 지난 7월 1일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한 병원측도 검찰측 결과에 반발해 항고 등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혐의를 받은 이들은 A조합 부당운영을 규탄하기 위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접수해서 지난 토요일부터 집회에 돌입했다.

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20. 8. 20.과 2021. 2. 24. 이 사건 기사의 대상이 된 형사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B에 대하여 각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론보도 청구권

피고 E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사실적 주장을 보도하였고, 원고들은 위 기사로 인하여 그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E을 상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추후보도 청구권

원고 B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당하였다고 보도되었고, 이후 관할 검찰청은 위 고소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 E은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E에게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 반론 및 추후보도의 내용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 및 별지 2 기재 추후보도문을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하고, 위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시 그 이행기간의 완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 기재된 죄명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오인되어 사회적 평가 및 명예가 훼손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의 보도행위를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1) 이 사건 기사는 원고들이 피고 C 등에 의해 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고소된 각 죄명을 열거하였을 뿐이며,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 2) 이 사건 기사는 원고 B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원고 B이 분쟁 상대방인 피고 C 등에 의해 고소당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기사가 독자들에게 원고 B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이 사건 기사 중 ‘법적 공방 장기화 될 듯’, ‘법적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표현은 원고 B과 피고 C, D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사정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기사 중 ‘부당운명을 규탄하기 위한’이라는 표현은 피고 C 등이 신고한 옥외집회의 목적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관한 부연설명도 없으므로, 이러한 표현만으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론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 별지 생략 -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며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는 공기업인 원고가 추진하는 대학 설립 사업이 회사 퇴직 임원이나 증권계 인사를 교수직으로 들이기 위한 ‘낙하산 인사 일자리용 사업’이라는 의혹에 대해 보도하였다. 원고는 이 기사가 악의적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해당 보도가 원고의 사내대학설립 추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는 것을 기재한 것일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러한 표현이 원고 및 원고 대표자에 대한 부정적인 피고의 주관적 사정이 고려되었다 할지라도 원고의 해명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점, 공공기관으로서 감시와 비판이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의 대표자는 이전에도 지출, 인사에 관한 잡음이 있어 왔고 감사에서도 윤리경영 부분에서 D플러스 등급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판결문

사	건	2020가단304638 손해배상(기)
원	고	A기관
피	고	B
변론종결		2021. 8. 24.
판결선고		2021.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C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목적으로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라 1999. 6. 3. 설립된 공기업(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 정부 출자)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경제신문인 D(이하 '이 사건 신문'이라 한다)의 기자이다. E은 2018. 3. 8. 원고 대표자 사장으로

취임하였고, 피고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원고를 포함하여 정부 산하 36개 공기업에 대한 취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0. 2. 5. [F]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이 사건 신문 웹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에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F

A가 지난해 연말 임직원 교육을 위한 사내대학 설립 계획을 외부기관에 의뢰해 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회사 퇴직임원이나 증권계 인사의 '교수진 일자리 마련 용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증권사 출신으로 지난 2018년 3월 A 사장으로 취임한 E 사장이 지난해 공사 내 G에 새로운 개방형 직책을 만들어 증권사에 함께 근무했던 지인을 채용해 공사 노조가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 이번 사내대학 설립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5일 A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A은 지난해 11월 'H 용역' 공고를 내고 같은 해 12월 용역계약을 체결해 현재 용역을 진행중이다.

공사의 이 같은 사내대학 설립 움직임에 초기엔 오는 4월 I를 앞두고 부산을 비롯한 일부 도시를 대학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정부여당을 의식한 A의 총선용 행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A 측은 대학 설립 추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후보지 관련 총선용 행보라는 소문에는 펄쩍 뛰었다. 공사 측은 후보지를 검토한 바 없고, 4월 총선과 용역 완료시점도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더욱이 대학설립 추진을 지방자치단체나 국회의원과도 소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사관계자는 "현재 사내에 연수원이나 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이 전혀 없어서 교육과 연구기능을 결합한 기관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일 뿐"이라며 "아직 정원 수나 교수진 규모, 교육과정, 대학형태 등 정해진 것은 없다"고 외부의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A의 사내대학이 회사 퇴직임원이나 증권계 인사를 교수진으로 들이기 위한 '낙하산 인사 일자리용' 사업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교수는 "A 업무가 일종의 보험업무의 성격을 갖고 있고 상품개발 등을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자체 대학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 공기업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자체 대학이 필요치 않은 공기업이 A뿐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도 "A이 굳이 대학 설립을 추진한다면 이는 교수진 채용을 또 하나의 낙하산 인사 통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이 관계자의 말은 지난 2018년 3월 사장 취임 전까지 서울 소재 대학 금융학부에서 겸임교수를 맡고 있던 E 사장을 포함해 A 임원들이 퇴임 후 (사내대학) 교수진으로 다시 들어오거나 자신들이 지인을 '낙하산 교수'로 앉힐 수(선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같은 외부의 우려 섞인 지적은 증권사 출신의 E 사장이 지난해 산하기관인 G에 증권사 지인을 채용했다는 노조의 의혹 제기 사례에서 비롯된 A 경영진 불신과 맞닿아 있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장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호화 관사, 관용차 개조 등 각종 방만경영 사례를 질타받았다. 당시 J당 K 의원은 “(E 사장의 각종 방만 경영이) 수사도 받아야 하는 수준”이라고 강도높게 질책했고, L당 M 의원조차 “지난해(2018년)에도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달라지는게 게 없다”며 이 사장을 책망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여러 방만경영 전례가 있는 E 사장이 대학 설립을 추진한다면 안팎에서 그 의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끝)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의 사내대학 설립 의도가 ‘원고의 퇴직임원이나 증권계 인사를 교수진으로 들이기 위한 낙하산 인사 일자리용 사업’, ‘충선용’라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다. 피고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악의적인 보도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대표자인 E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불신이 높았고, 2019년에는 동갑내기 지인을 기존에 없던 개방형 계약직 팀장으로 채용하여 위인설관(爲人設官, 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만든다는 뜻)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난을 받아오는 원고 대표자 사장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내대학을 굳이 설립한다고 하여 업계는 당연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 홍보실 및 업계 관계자를 취재하여 업계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현 상황을 사실대로 보도하였다. 이 사건 기사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관한 내용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한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적시된 기초사실만으로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고, 표현행위에 적시된 사실 중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허위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타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 (2) 한편 언론매체의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또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그와 동시에 묵시적이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 아니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도내용 중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등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보도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09.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표현 행위자의 내심의 의도나 상대방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보도의 객관적인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가 비판적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한 다음 그 표현행위자로 하여금 사실의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257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5924 판결 등 참조).

- (3)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고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어떤 사실을 기초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참조).
- (4)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이 사건 기사가 게시되기 전 2020. 1. 31. N언론은 “O”라는 제목하에 “P이 대선을 앞두고 지역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Q 설립입니다. 그런데

주택분양보증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A도 총선을 몇 달 앞둔 이 시점에 대학 설립을 추진 중인 사실이 N언론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중략) 이를 두고 교육업계에서는 임직원이 820명 수준인 A가 직원 교육만을 위해 대학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후략)”라는 취지의 기사가 게시되었다.

- (2) 피고는 2020. 1. 31. 원고 홍보실로부터 사내대학 설립관련 해명자료를 송부받았다. 위 해명자료에는 위 N언론 기사에 대하여 원고 입장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는 서민주거 안정과 도시재생 활성화 등 정책수행 역할 확대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종합교육 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연구역량 및 R&D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과 연구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A 대학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동 보도에서 언급된 부산을 비롯한 몇 곳의 후보지는 현재 검토된 바 없고, I과 용역 완료시점은 무관함”이라고 되어 있다.
- (3)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기 전인 2020. 2. 4. 증권관계자와 사이에 원고의 사내대학 설립에 관하여 인터뷰하였다. 피고가 ‘대학설립을 통해서 E 사장이 자기 지인을 교수진으로 채용하려는 우려도 있지 않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위 증권업관계자는 ‘충분히 그럴 우려가 있다. 우선 뭐 대학 자체를 설립할 이유가 없다. E이 취임 당시에도 좀 많이 얘기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4) 한편 R언론의 2019. 7. 12.자 신문에는 원고 대표자 E의 방만경영을 비판하는 기사가 게시되었고, S언론에서는 2019. 6. 11.자로 원고 E의 채용비리, 황제의전 의혹을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기도 하였다. T노동조합은 2019. 6. 11.자로 “P 정부의 최악의 낙하산 인사 E A기관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라는 제목하에 “E이 지난 11월 원고 팀장 직위에 과거 증권사에서 자신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갑내기(만 56세)를 채용하고,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위인설관의 형태로 의심되는 자리가 만들어진 후 개방형 팀장 명분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E이 지인 채용비리, 혈세낭비 황제의전, 인격파괴 경영갑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 당국의 철저한 의혹 규명과 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 (5) U당 의원은 2019. 10. 14. V 국정감사에서 E에 대하여 “P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 E 사장이 호화차량 개조, 임대종료 안 된 사무실 이전 등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1억 원 대의 공사 예산을 낭비하고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유로 지난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하였고, W 무소속의원도 “사장이 풍수지리적 이유로 임대기간이 남은 사무실을 여의도로 옮겼고, 3억 5,000만 원 이상의 임대료, 관리비 손실을 입혔다며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 사장 때문에 직원들이 경고를 받기도 했다면서 원고가 윤리경영 D플러스 성적을 받았는데 창피할 노릇이다. 저 같으면 그만 두고

사퇴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며, X 무소속 의원도 “공공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것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사퇴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 (6) 원고의 직원은 890명 정도이다. 원고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금액은 2019년 15조 9208억 원, 2020년 21조 7075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2020년 보증료 수입금액은 347억 원인데 반하여 대위변제금액은 558억 원으로 211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다.

다. 판단

- (1)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의 사내대학 설립의도에 관하여 ‘퇴직임원이나 증권계 인사의 교수진 일자리 마련용’, ‘총선용 행보’라는 의혹이 있다는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사내대학을 설립하려고 하였던 것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피고가 인터뷰를 통하여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내대학 설립 의도에 대하여 퇴직임원 일자리 마련용, 총선용 행보라는 의혹이 있다고 기재한 것은 원고의 사내대학설립 추진이라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는 것을 기재한 것일 뿐이고, 이러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설령 피고가 다른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그러한 비판적 견해에 대한 폭넓은 탐지 없이 ‘그러한 의혹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러한 표현이 원고 및 원고 대표자에 대한 부정적인 피고의 주관적인 사정이 고려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해명이 구체적이지도 아니하고 사내대학 설립에 대한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정부출자금이 1/2 이상인 공공기관으로서 분양보증 또는 국민들이 납부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운영되므로 경영전반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비판이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 대표자 E은 그 전에도 지출이나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있어왔고, 감사에서도 윤리경영 부분에 관하여 D플러스 등급을 받은 적이 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관한 질책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쳤고, 다소 경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정 기업이 고객상담사인 원고의 얼굴과 성명이 노출된 사진을 홍보용으로 배포했다라도, 원고와 무관한 불법 추심 의혹 보도에 해당 사진을 사용하는 것까지 원고가 수인할 의무는 없다

[사실관계]

피고는 C 기업이 연체 통화료 채권 추심업무를 G 등에 위탁하였고, G 등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연체료를 회수하여 온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 사건 기사 중에는 C 기업이 홍보자료로 배포한 사진이 포함되어었는데, C 로부터 고객상담업무를 위탁받은 D 사 소속 상담사인 원고의 얼굴과 성명이 노출되어 있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원고의 초상 및 성명이 노출된 부분을 수정하고 손해배상으로 2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피고 언론사는 사진을 수정하였으나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으로 이행하였다.

법원은 해당 보도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원고의 성명과 얼굴을 공개한다 하여 기사를 통해 밝히려는 내용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지도 않아 초상권 침해가 불가피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여 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C 기업이 홍보용으로 사진을 배포하였으므로 기사에 사진이 사용되었더라도 원고가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는 C 나 G의 불법추심과 무관한 D사의 직원일 뿐이고, 신설된 상담팀 홍보를 전제로 촬영 및 배포에 응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수인의무를 부담시킨다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요지]

… 원고의 초상과 성명이 그대로 노출된 이 사건 사진이 F일자부터 K일자까지 C의 불법추심 의혹을 폭로하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해 대중에게 공표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의 공표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초상에 관한 촬영, 배포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언론사가 그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3자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를 폭로하는 취지의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사진 형식으로 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초상권과 성명권(이하 '초상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 원고는 C로부터 고객상담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D 소속 고객상담사로서, C의 고객에게 고객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 채권추심업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기사에 언급된 C의 불법추심 의혹과는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진은 C의 '우리가족상담팀' 신설 홍보용으로 촬영된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홍보를 전제로 사진 촬영, 배포에 응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수인의무를 부담시킨다면 이는 원고의 당초 의도를 크게 벗어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

판결문

사 건 2020가합4480 손해배상 청구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0. 20.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로부터 고객상담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D 소속의 고객 상담사이다. 피고는 인터넷신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를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 나. 피고는 F일자 'C는 연체 통화료 채권 등의 추심업무를 G 등에 위탁하였는데, 위 G 등이 연체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 정지일을 실제보다 앞당겨 연체 고객에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연체료를 회수하여 온 정황이 있고, C가 이를 허용하고 있어 보인다'라는 취지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를 인터넷신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하였다.
- 다. 이 사건 기사 내용 중에는 C가 신설한 '우리가족상담팀'의 홍보를 위하여 촬영, 배포한 사진(원고의 얼굴과 성명이 노출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사진', 갑1 중 7쪽 참조)과 그 하단에 『H일자 C가 서울, 부산, 광주 고객센터에 '우리가족상담팀'을 새로 만들었다며 보도자료에 덧붙여 공개한 서울 I 고객센터 상담 모습. 왼쪽에 보이는 고객 상담용 전산 화면이 E에 제공된 G와 J의 이동전화료 연체 고객 이용정지일 당기비용 '유큐브(U Cube)' 화면과 짜임새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 라. 원고 측은 수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기사에서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2020. 8. 3. 원고 측의 요청을 거절하는 취지로 이메일 통보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해 자신의 초상권, 성명권 등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2020. 8. 14.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는 2020. 9. 11. 피고에게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위 기사에서 원고의 초상 및 성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정할 것 등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K일자경 이 사건 사진 중 원고의 초상 및 성명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하였으나, 손해배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2020. 9. 22.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5호증(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 C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얼굴과 이름이 드러난 사진을 C의 불법 추심 관련 기사에 별도 편집 없이 그대로 드러내어 원고의 초상권, 성명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초상권, 성명권 등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합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자기 스스로를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성명에 관하여도 상업적 목적 또는 명예 훼손적 방법 등으로 합부로 이용당하지 않을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초상권 및 성명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초상권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성명권에 관하여도 위 기준에 따라 침해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초상과 성명이 그대로 노출된 이 사건 사진이 F일자부터 K일자까지 C의 불법추심 의혹을 폭로하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해 대중에게 공표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의 공표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초상에 관한 촬영, 배포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언론사가 그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3자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를 폭로하는 취지의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사진 형식으로 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초상권과 성명권(이하 '초상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이 이미 홍보용 보도자료로 배포된 이상, 피고가 위 사진을 E 기사에 게재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C로부터 고객상담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D 소속 고객상담사로서, C의 고객에게 고객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 채권추심업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기사에 언급된 C의 불법추심 의혹과는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진은 C의 '우리가족상담팀' 신설 홍보용으로 촬영된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홍보를 전제로 사진 촬영, 배포에 응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수인의무를 부담시킨다면 이는 원고의 당초 의도를 크게 벗어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성조각 여부

피고는, ① 이 사건 기사는 C의 불법추심 의혹 폭로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진 하단에서 원고는 서울 I 고객센터의 상담 직원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C의 불법추심 의혹과는 관련이 없음을 명시하였던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사용한 이유는 원고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의 고객정보리스트의 모습과 추심업체인 G 등이 사용하는 고객정보리스트의 모습이 동일함을 강조함으로써 C의 발뺌을 반박하고 채권 불법추심 의혹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은, C의 불법추심 관련 정황을 폭로함으로써 대기업의 잘못된 추심 관행을 꼬집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중대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진을 공표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의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원고의 초상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사진을 그대로 노출하였는바, 이는 침해행위의 보충성이나 침해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진 중 원고의 얼굴과 이름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한 뒤 현재 검색되는 기사(을1)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진을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밝히려는 내용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침해행위의 필요성 내지 효과성도 인정될 수 없고, 그밖에 초상권 등의 침해가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인(公人)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진이 인터넷 기사에 게재되는 것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거나, 이를 감수할 지위에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기사를 읽는 독자로서는 이 사건 사진 하단에 작은 글씨로 설명된 내용만으로 원고가 C의 불법추심 의혹과 관련이 없음을 쉽사리 인식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진에 얼굴과 성명이 노출된 원고가 위 의혹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예단에 빠지기 쉬워 보인다. 피고의 이 사건 사진 공표로 인해 초상권 등에 대하여 부당한 침해를 입은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사진 공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기사에 의한 초상권 등의 침해 정도, 초상권 등의 침해 경위, 이 사건 기사 게재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공표함으로써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여기로 한다.

1-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가단524827

원고가 광고를 위하여 스스로 공개한 사진을 원고를 비판하는 보도에 사용하였더라도, 광고 문구와 사진이 일체를 이룬 상태로 게재된 것을 그대로 옮기면서 원고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변호사인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해 자신이 전관임을 밝히고, ‘재판전 종결’,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사전 차단’ 등의 문구를 포함한 광고를 법률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피고는 해당 광고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F협회(변호사협회)가 징계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보도에 원고의 사진을 첨부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비록 원고의 광고문구와 보도내용 제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나 함축적 표현으로서 허용되는 것이고, ‘전관’ 표현이 변호사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피고가 첨부한 원고의 사진이 문제가 된 광고문구와 일체를 이룬 상태로 게시되어 있었고 이를 그대로 옮기면서 원고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면, 설사 머리 모양이나 체형 등으로 원고를 식별할 수 있더라도 초상권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초상권 침해 주장도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이 사건 기사 제목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차단’과 이 사건 홈페이지의 광고 문구 ‘구속영장 청구 차단’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 제목의 주요 부분이 이 사건 홈페이지의 광고 문구와 합치하는 이상 제목 부분에서 이러한 정도의 함축적 표현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위와 같은 문구는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관련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 이 사건 기사에 게재된 사진은 원고가 광고를 위하여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사용한 사진과 동일하다. 즉 원고 스스로 초상을 공개하고 공론의 장으로 나온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광고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 문구를 그대로 노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홈페이지에는 광고 문구와 원고의 사진이 일체를 이룬 상태로 게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를 그대로 옮기면서 원고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초상권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문

사 건 2020가단5248271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원고는 검사로 재직하다가 2019. 2. 퇴임한 후 그 무렵부터 '변호사 C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피고는 일간지 "D"의 기자이다.
- 원고는 위 법률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에 원고의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광고 문구를 게시하였다.

2019년 2월 전관, 3월 변호사 업무 개시

단지 전관이라서가 아닙니다. 만시간의 법칙! 검사로서 매달 300여건씩 13년간 수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그 경륜과 노하우로 이제 당신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중략>

빈틈없는 경찰검찰단계 대응으로 재판전 종결!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사전 차단!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 <이하 생략>

- 피고는 2019. 6. 11. 'D' 인터넷 홈페이지에 『E』라는 제목의 아래 기사를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고의 사진 5장과 함께 게재. 보도하였다.¹⁶⁾

E[1 부분]

전관 출신 변호사의 각종 비위 행위가 잇따르자 변호사업계 안팎에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자신이 전관 출신이라고 광고하는 변호사가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F협회는 이 광고가 현행법 위반이라 보고 해당 변호사에 대해 징계 처분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2 부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출신 G모(○○.여.사법연수원 ○○기) 변호사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베테랑 증경검사 출신'임을 강조하며 '단지 전관이라서가 아니다. 검사로서 매달 300여건씩 13여년간 수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륜과 노하우로 당신 편이 되겠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특히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사전 차단'이라는 문구가 의뢰인의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나 구속은 국민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조치여서 법원의 엄격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그런데 해당 광고는 A 변호사가 자신의 '친정'에 해당하는 검찰 단계에서부터 영장 청구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검찰 인맥을 활용하겠다고 대놓고 광고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J의 한 변호사는 "지금 내가 전관이기 때문에 우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현직 수사관청으로 하여금 직권을 남용하도록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고 규정이라든가 변호사업계의 경제적 문제를 떠나 우리 사회가 법조인들에게 기대하는 기본적인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제 갓 나온 따끈따끈한 전관임을 대놓고 광고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체포나 구속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담당 검사와 '거래'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3 부분]

이 밖에도 A 변호사는 광고에서 자신이 검사 시절 성폭력 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인증 받았으며, 대검찰청 형사부 연구관 시절 각종 검찰 사법제도 수립 작업에 관여한 점을 내세워 변호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고 있다.

16) 피고는 위 인터넷 최초기사 외에 같은 날 『H』라는 제목의 인터넷 수정기사와 다음 날 『J』라는 제목의 지면 기사도 게재. 보도하였는데, 인터넷 수정기사와 지면기사의 내용도 인터넷 최초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인터넷 최초기사 게재.보도 후 원고의 수정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다).

현행 변호사법 30조는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사건 수임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 관계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8월에는 수사검사가 자신과 사법연수원 동기임을 내세우며 전관 출신임을 강조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F협은 A 변호사의 광고 행위가 사실상 검찰 인맥을 변호사 업무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추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징계 처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1 부분] F협 관계자는 “별도 진정서가 접수될 경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 원고의 주장

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재산적 손해 1,000만 원 및 위자료 3,000만 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기사 부분	원고 주장
1 (구속영장 사전차단)	원고의 광고 문구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사전 차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전후 문장을 종합하면 수사 단계에서 빈틈없이 대응하여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사전 차단을 목표로 변론하겠다는 취지인데도, ‘구속영장 사전 차단해 드립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광고 문구와 다를 뿐만 아니라 법조브로커를 연상케 하는 문구를 사용하여 허위 사실 적시
2,1 (F협회 징계처분)	기사에 등장하는 F협회 관계자는 원고의 광고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 향후 문제가 될 경우 논의를 거쳐 징계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고 했을 뿐인데도, 원고의 광고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고 징계처분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 적시
3 (직권남용 등)	이 사건 홈페이지 어디에도 검찰인맥 활용이나 직권남용, 검사와의 거래에 관한 언급이 없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사실 적시

나. 초상권 침해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원고의 사진 5장을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상권 침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명예훼손 부분

1) 관련 법리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때를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 신문기사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2) 불법행위 성립 여부

이 사건 기사 게재.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홈페이지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사전 차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기사 제목의 ‘구속영장 사전 차단해 드립니다’는 위 광고 문구와 주요 부분이 합치한다.

이 사건 기사 제목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차단’과 이 사건 홈페이지의 광고 문구 ‘구속영장 청구 차단’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 제목의 주요 부분이 이 사건 홈페이지의 광고 문구와 합치하는 이상 제목 부분에서 이러한 정도의 함축적 표현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기사 본문에서는 이 사건 홈페이지의 문구 그대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사전 차단’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원고 주장처럼 일반 독자가 위 제목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광고하였다고 인식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 2.4 부분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4호는 변호사가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30조는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한편 F협회(이하 ‘F협’)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제9호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2019. 6.경 이 사건 홈페이지의 광고 문구에 ‘2019년 2월 전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아울러 자신의 검사로서의 활동 내역도 소개하였다. 공무원이었던 변호사가 퇴직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부터 특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문제가 사법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보면, 위 ‘2019년 2월 전관’이라는 문구는 단순히 원고가 2019. 2. 검사직에서 퇴직하였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률소비자로 하여금 원고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전관’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 사건 홈페이지에 사용된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사전 차단’이라는 문구와 종합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구는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관련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의 F협 회신결과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 피고는 이 사건 기사 보도에 앞서 F협 관계자에게 이 사건 홈페이지의 광고 문구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였고, 위 관계자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징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F협 측이 이 사건 홈페이지 광고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는 단정적 표현으로 오해될 만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이 부분 표현 또한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부분

이 부분 표현은 이 사건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변호사의 비판적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한 것일 뿐(실제로 위 변호사는 피고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 표현과 같은 내용으로 발언하였다),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나. 초상권 침해 부분

1) 관련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합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 31628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등 참조).

2) 불법행위 성립 여부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 원고의 사진을 게재한 것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원고의 사진에서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얼굴 등 원고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설령 원고 주장처럼 모자이크 처리가 불충분하고 원고의 머리 모양이나 체형이 그대로 노출되어 원고임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기사에 게재된 사진은 원고가 광고를 위하여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사용한 사진과 동일하다. 즉 원고 스스로 초상을 공개하고 공론의 장으로 나온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광고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 문구를 그대로 노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홈페이지에는 광고 문구와 원고의 사진이 일체를 이룬 상태로 게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를 그대로 옮기면서 원고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초상권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제2장

보도게재청구

이 장에서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 등 보도게재청구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사실관계나 법리가 명시된 판례를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5. 11. 선고 2020가합259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사안을 두고 위원회가 언론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보도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시의원인 원고들은 피고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조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자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후 피고 언론사는 “(원고들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본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언론중재부의 판단으로 실패했다”, “본지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이들이 요청한 정정보도 요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후속 보도를 게재하였다.

원고들은 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차 조정을 신청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는 직권으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2천만 원)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법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피고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허위사실보도로 판단하고 정정보도 게재를 명하였다.

다만 해당 보도가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부수적 보도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언론중재위원회가 1, 2차 언론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밝힘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조정을 불성립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및 본문 중 여러 차례 ‘원고들의 언론중재 신청이 실패하였다’거나, ‘언론중재위원회가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점 등 이 사건 기사의 보도목적과 그 내용, 전체적인 맥락 및 표현, 사용된 어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사 중 위 부분은 1, 2차 언론조정신청 사건에서 조정이 불성립된 이유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피고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원고들의 1, 2차 언론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바, 이는 허위 사실이 보도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판결문

사	건	2020가합259 정정보도 등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주식회사 E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5. 11.

주 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 가. F 1면 오른쪽 상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상자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2020. 6. 10.자 F 1면 「G」 제목의 기사 중 부제목 “H”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 활자는 위 기사의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고,
 - 나. 인터넷 F 초기화면(인터넷주소 1 생략) ‘F SNS 전광판’ 섹션 위에서 2번째 기사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2020. 6. 10.자 인터넷 F 정치면 「G」 제목의 기사(인터넷주소 2 생략)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 활자는 위 기사의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며,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 다. 제1, 2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위 나.항 기재 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라.
2. 피고가 제1항의 각 의무를 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주문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4.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만약 피고가 제1항 기재 기간 안에 같은 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들은 I시 시의원이고, 피고는 'F'라는 신문 및 '인터넷 F(인터넷주소 1 생략)' 라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회사이다.
- 나. 피고는 2019. 11. 13. F 및 인터넷 F에 “원고들이 시의회 사무실에 보건소 직원을 불러 독감백신을 접종하였고, 이에 대한 파문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 후 2020. 4. 21. 인터넷 F 및 같은 달 22. F에 원고들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에 동원되어 여성 시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F의 독감백신 접종 보도 관련하여 보건소 직원들을 회유하고, 전국 언론사에 위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배포하고 있으며, 수사결과

독감백신 접종이 사실로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시청 직원들을 회유한 혐의와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계속 수사가 확대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 다. 원고들은 2020. 4. 말경 언론중재위원회에 위 2020. 4. 21. 및 같은 달 22.자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언론조정신청(이하 ‘1차 언론조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피고는 2020. 5. 6. F 및 인터넷 F에 “I시청 직원이 별개 사건과 관련하여 모 시 의원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당했다.”는 폭로 기사를 게재하면서, “모 시의원은 2020. 4. 22.자 기사에서 언급된 독감백신 접종 파동 때 시의원 4명 중 한 명인 여성시의원이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원고 D는 2020. 5. 8. 언론중재위원회에 위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언론조정신청(이하 ‘2차 언론조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는 피고가 조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자, 2020. 6. 4. 1, 2차 언론조정신청에 관하여 각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였다.
- 바. 피고는 2020. 6. 10. F 및 인터넷 F에 「G」라는 제목 및 「J」라는 부제목 아래 본문으로 “K I시의회 4인방이 본지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본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언론중재부의 판단으로 실패했다.”, “중재부는 이를 받아들여 F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으로 중재불성립’ 판단을 함에 따라 K 4인방은 정정보도, 배상 청구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실패했다.”, “중재부는 본지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이들이 요청한 정정 보도 요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F는 이 사건은 이미 경찰수사에서 ’혐의 있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중략)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증빙자료를 갖고 있는 당사자나 F 등이 별도의 수사 촉구 등을 할 사항이라고 밝히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 중 일부를 제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별지3-1, 2의 각 기재와 같이 각 게재하였다.
- 사. 원고들은 2020. 6. 18.경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언론조정신청을 하였고, 언론중 재위원회는 2020. 7. 1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위 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2020. 7. 22. 이의를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소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 1, 2차 언론조정신청 사건은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협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것임에도, 이 사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1, 2차 언론조정신청이 실패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독감백신 접종에 관하여 I시청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통보되어 행정처분을 받았을 뿐임에도, 이 사건 기사에서는 원고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처럼 보도하였다.

이 사건 기사에는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이 게재되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를 구함과 아울러,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기사는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없다.

3. 판단

가.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금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고, 사실적 주장과 의견을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참조).

여기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허위 사실의 보도 여부

(1) 먼저, 이 사건 기사 중 “1, 2차 언론조정 사건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피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재(조정)불성립 결정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언론중재위원회가 1, 2차 언론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혐의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밝힘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조정을 불성립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보도내용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한 1, 2차 언론조정신청 사건의 진행경과 및 그 결과를 알리는 것인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및 본문 중 여러 차례 ‘원고들의 언론중재 신청이 실패하였다’거나, ‘언론중재위원회가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점 등 이 사건 기사의 보도목적과 그 내용, 전체적인 맥락 및 표현, 사용된 어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사 중 위 부분은 1, 2차 언론조정신청 사건에서 조정이 불성립된 이유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피고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원고들의 1, 2차 언론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바, 이는 허위 사실이 보도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 중 “피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원고들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 있음’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독감백신 접종 사건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받았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기사 중 위 부분은 피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 한 자신들의 주장을 인용하는 형태를 취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주장 안에 포함된 사실관계, 즉 “원고들이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보도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사 중 위 부분은 원고들이 아니라 독감백신 접종을

해 준 보건소 공무원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기사는 원고들의 1, 2차 언론조정신청의 진행경과와 내용을 보도하기 위한 것인 점, 위 기사 부분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들이 당사자인 1, 2차 언론 조정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위와 같은 반박 주장을 하였다는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사의 보도목적 및 내용, 위 기사 부분 전후의 맥락, 피고가 위 주장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 부분은 원고들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 있음'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사실은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 통보를 했다는 사실과 그 처분의 성질, 적용규범,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데,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원고들이 형사사건의 피의자 지위에서 수사를 받았고, 향후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강하게 암시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 기사 부분 또한 허위 사실이 보도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의 내용과 분량 및 표현 방식,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여 주문과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하고, 아울러 피고가 위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원고들에게 각 1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한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기사 게재 행위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사는 피고가 원고들의 독감백신 접종 행태 및 법적 문제점을 고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게재한 기사에 원고들이 언론 조정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그 언론조정신청이 조정 불성립이라는 소득 없는 결과로 종결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 점, ② 피고가 보도한 원고들의 독감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일부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이 사건 기사는 피고의 위 독감백신 접종 사건에 대한 일련의 보도 과정에서 기사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게재한 부수적 보도에 불과한

점, ③ 원고들이 혐의 있음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피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 한 주장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게재된 것인 점, ④ 실제로 원고들이 피고가 보도한 위 독감백신 접종 문제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까지 받았고,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 소속 기자들로서는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에 일부 허위 사실이 적시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에 의하여 원고들의 사회적 평판이 추가로 훼손되었다거나, 피고 소속 기자들이 원고들의 사회적 평판을 부당하게 떨어뜨리려는 의도나 과실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기사 게재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피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생략 -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단34903

추후보도청구의 상대방은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이므로, 기사의 작성·보도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지국장에게 추후보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피고는 미국에 본사를 둔 뉴스통신사의 서울지국장이다. 원고는 해당 뉴스통신사의 보도에서 주한 미국 대사를 협박한 피의자로 언급된 사람이며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해당 보도에서 원고가 특정되지도 않았고, 원고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하였으며 경찰의 공식 발표내용을 그대로 보도했으므로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피고가 추후보도 게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보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추후보도청구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언론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판결요지]

… 추후보도청구의 상대방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인 D가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기사 작성·보도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피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20가단3490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7. 7.
판	결	선	고	2021.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원고는 미국에 본사를 둔 뉴스통신사 “D”(이하 ‘D’)의 2015. 7. 24.자 서울발 기사 “E”(“F”,¹⁷⁾ 이하 ‘이 사건 기사’)에서 피의자로 언급된 사람이다. 피고는 D 서울지국의 지국장이다. 원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언급된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무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노4872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3. 12. 확정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말미암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기사 작성, 보도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사에서는 “33세 무직 남성”(“33 years old jobless man”) 또는 “G씨”(“The man surnamed G”)가 피의자로 지칭되고 있을 뿐이어서

17) 원문 및 번역문을 별지로 첨부한다.

해당 인물이 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사 내용도 해당 협박 혐의에 관하여 경찰의 공식 발표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달리 단정적인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해당 인물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까지 덧붙이고 있어, 해당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D 측으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언급된 범죄 혐의에 관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추후보도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후보도청구의 상대방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인 D이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기사 작성·보도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피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공권력의 행사자인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일뿐 소지자로 볼 수 없지만, 사경제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본권 주체로서 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사실관계]

원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다. 피고 언론사는 원고가 결함이 있고 단종된 프로세서를 탑재한 슈퍼컴퓨터 도입 계약을 맺었고, 결함과 단종 사실을 알면서 특정 회사와 유착하여 이를 눈감아주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는 정정보도는 기각되고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인용되었다. 원고는 정정보도 대상 보도를 추가하여 항소하였고, 피소는 2심 법원에 원고는 공법인으로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본안 전 판단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고의 슈퍼컴퓨터 도입 사업 수행은 원고가 사경제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가깝고 사업을 적절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원고의 외부적 명예와 관련되므로 기본권 주체로서 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정정보도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판결요지]

…권력의 행사자인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기본권의 수범자일뿐 기본권의 소지자로 볼 수 없지만,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 문제된 원고의 슈퍼컴퓨터 도입 사업의 수행은 원고가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가깝고, 원고가 슈퍼컴퓨터 도입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을 적절히 수행 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의 외부적 명예와 관련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공법인으로서 재단 법인인 원고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문

사 건	2020나2031683 손해배상(언)
원 고, 항 소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8가합35721 판결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9. 10.

주 문

-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A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의 초기화면에 별지1 기재 정정 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별지1 제1항 기재 제목을 []안에 통상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별지4 기재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활자체 및 줄간격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위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위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 나. 피고 주식회사 A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추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그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A(인터넷주소 1 생략)’ 초기화면에 3일 동안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그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 기사를 열람하는 한 정정보도문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라.
- 다. 피고 주식회사 A가 위 나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2021. 8.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인 언론보도를 추가함으로써 정정보도청구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다만 정정보도문은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으로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초사실" 부분(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2째 줄부터 제3쪽 마지막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정부 출연기관인 공법인으로서 언론 보도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그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공권력의 행사자인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기본권의 수범자일뿐 기본권의 소지자로 볼 수 없지만,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들이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마271 결정 등 참조). 원고는 국가초고성능 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초고성능 컴퓨팅센터로 지정되어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확보 및 운용 등의 사업을 맡고 있다. 이 사건 제1~제6 기사에서 문제된 원고의 슈퍼컴퓨터 도입 사업의 수행은 원고가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가깝고, 원고가 슈퍼컴퓨터 도입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을 적절히 수행 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의 외부적 명예와 관련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공법인으로서 재단 법인인 원고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손해배상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표(제1심판결 제4쪽 위에서 6째 줄)의 항목 중 "적시 사실"을 "적시된 허위사실 또는 모욕적 표현"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부분(제1심판결 제4쪽 위에서 2째 줄부터 같은 쪽 표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정정보도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아래 표와 같이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제6 기사를 작성. 보도함으로써 인해 피해를 입었다[이하 아래 표의 각 순번 해당 부분을 '(○)부분'이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별지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 (3), (4)부분에 대하여만 정정보도 등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1), (5), (6)부분에 대한 정정보도 등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이 청구기초의 동일성 없이 소송절차의 지연만 초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변경 전후 정정보도 등의 대상인 언론보도가 모두 동일한 기사인 이 사건 제6 기사의 일부 내용으로서 위 기사의 내용에 관한 분쟁이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변경으로 소송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기사 내용	원고 주장
(1)	I(I)사의 T프로세서(T Processor)의 단종 소식은 2017년 중순 이후 알려지고 'U'에 보도되었음에도, 원고는 2017. 12. 단종 CPU(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 장치)를 탑재한 대한민국 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 계약을 맺었다.	원고가 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 계약을 맺은 시점은 2017. 8.이다. 슈퍼컴퓨터 5호기에 탑재된 프로세서에 대한 I사의 단종 발표는 2018. 7.에 있었다.
(2)	원고는 슈퍼컴퓨터 5호기에 장착할 T프로세서가 불량결함 CPU인지도, 단종 모델 인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슈퍼컴퓨터 5호기에 장착한 I사의 CPU에서 결함이 발견된 사실이 없다.
(3)	원고는 T프로세서가 불량결함 CPU이고 단종 모델임을 알고서도 J사(J)와의 유착관계로 이를 눈감아주었다.	원고는 위 CPU에 결함이 있고 단종된 모델임을 알고서도 J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어 이를 눈감아준 사실이 없다.
(4)	원고는 자체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통해 해당 CPU를 최적화할 능력이 없다.	원고는 다양한 프로세서에서 최적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5)	원고가 확보한 예산을 무조건 집행하기 위해 30억 원에 가까운 리스비용을 지급하면서 리스회사를 끼워 일괄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해석이다.	슈퍼컴퓨터 5호기 구축 예산은 연차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다.
(6)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미국 아르곤연구소의 내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를 조작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인용되었던 보고서는 미국 국립에너지연구슈퍼컴퓨팅센터(National Energy Research Scientific Computing Center, 이하 'NERSC'라 한다)의 보고서이고, 원고는 해당 보고서를 조작하여 제시한 사실이 없다.

4.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5쪽 위에서 7째 줄부터 제12쪽 아래에서 8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아래에서 2째 줄의 "원고 내지 원고 구성원들의"를 "원고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쪽 위에서 11째 줄의 "이 판결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쳐 쓴다.

5.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

정정보도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 8678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6 기사에 적시된 사실과 그 허위 여부

1) (1)부분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은, 'I사의 T프로세서의 단종 소식은 2017년 중순 이후 알려지고 'U'에 보도되었음에도 원고는 2017. 12. 단종 CPU를 탑재한 대한민국 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갑 제17, 18, 23, 2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I사의 T프로세서가 단종된다는 소식이 보도됨으로써 알려진 이후에 원고가 단종 CPU를 탑재한 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 계약을 맺었다'는 적시사실은 허위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① U는 한 해에 두 번씩 세계 슈퍼컴퓨터의 500대 순위를 정하여 발표하는 사이트인데 (인터넷주소 2 생략), U에서 2017. 11. 14. I사의 T 프로세서(T Processor) 제품이 단종 예정이라는 소식을 보도하였다.
- ② 위 보도 이전에 위 프로세서가 단종될 것이라는 소식이 광범위하게 알려진 것으로 불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I사는 2018. 7. 공식적으로 위 프로세서의 단종을 발표하였다.
- ③ 원고는 U의 2017. 11. 14.자 보도 이전인 2017. 8. 16. J사와 슈퍼컴퓨터 5호기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9. 18. 위와 같은 구매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따라 2017. 9. 18.자로 여러 신문에서 슈퍼컴퓨터 5호기 구매 계약 체결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2) (2), (3)부분

갑 제2호증의 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은, '원고는 슈퍼컴퓨터 5호기에 장착할 T프로세서가 불량결함 CPU인지도 단종 모델인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2)부분], 또는 원고는 T프로세서가 불량결함 CPU이고 단종모델임을 알고도 J사와의 유착관계로 이를 눈감아주었다[(3)부분]'는 내용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의 주된 쟁점은 원고가 슈퍼컴퓨터 5호기에 도입할 CPU의 불량 또는 단종 여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이다[이 점에서 계약 체결 시점과 CPU의 단종 소식이 보도된 시점의 차이가 주로 문제되는 (1)부분과 그 쟁점이 다르다].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슈퍼컴퓨터 5호기에 탑재될 CPU가 단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앞서 본 U의 2017. 11. 14.자 보도는 I사 임원의 발언 및 블로그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고, T프로세서가 단종되면 그 프로세서를 탑재한 시스템을 구축한 고객은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 ② I사는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8. 7. 23. 위 프로세서의 단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통상 CPU 등의 단종 발표가 갑작스레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2017. 8.경에는 슈퍼컴퓨터 CPU 관련 업계에서는 위 프로세서가 단종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③ 피고 회사는 U의 위 2017. 11. 14.자 보도 중 미국 아르곤연구소와 I사가 슈퍼컴퓨터 계약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 슈퍼컴퓨팅 전문기업 대표인 S에 대한 취재내용(주식회사 V에서 I사의 T프로세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성능부조화가 나타나서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T프로세서에 결함이 확인되자 I사가 이를 헐값에 공급하기도 하였다) 등을 바탕으로, I사의 T프로세서에 결함이 있어 I사가 조기에 단종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이 사건 제6 기사를 작성하였다.
- ④ 원고는 I사의 CPU에서 결함이 발견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변론종결 시까지 위 구매 계약 체결 전에 CPU 단종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4)부분

갑 제2호증의 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은 '원고에게는 자체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통해 해당 CPU를 최적화할 능력이 없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6 기사에서, 원고가 슈퍼컴퓨터를 도입한 다음 자체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최적화 노하우로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끌어올려 사용하여야 하는데 원고에게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고가 J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슈퍼컴퓨터 5호기를 U에 등재하기 위한 성능시험까지 J사가 수행하도록 계약에 명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시까지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슈퍼컴퓨터 5호기의 성과에 대해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보도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5)부분

이 부분에는, 원고가 리스계약으로써 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 계약을 체결한 것은 허술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사건 제6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할 때, (5)부분에는 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리스계약 체결 방식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그 도입 비용이 추가 지출되는 것임을 비판하고자 하는 피고 회사의 의견이 표명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 회사가 그 보도 내용대로의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6)부분

이 부분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미국 아르곤 연구소의 내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를 조작하다 들통이 났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갑 제2호증의 6,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6기사에 언급된 보고서는 미국 아르곤연구소가 아닌 미국 NERSC인 사실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과정에서 원고가 위 보고서를 인용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6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연구소의 특징에 관한 차이는 이 사건 제6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이라기보다는 지엽말단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연구소를 잘못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전후 기사내용과 그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서 ‘조작’이라는 표현은 원고가 미국 연구소의 내부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항목을 제외하고 유리한 수치를 부각시키면서 이를 인용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비판적인 의견을 압축하여 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거나 그 표현을 허위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 1)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앞서 본 것처럼 (1)부분에 적시된 사실은 허위사실로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위 허위사실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 2) 법원은 사안에 적절한 정정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게재 방법, 추후 조치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 이 사건 제6 기사와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의 관련성, 이 사건 제6 기사에서 사용한 문구 등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6 기사에 관하여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게재 방법 등에

관하여는 주문과 같이 정한다.

- 3) 한편 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한다.

6.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회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제외)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추가한 정정보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생략 -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합5452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으로 제한되므로,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는 정부가 소득의 8%로 규정된 건강보험료율 상한과 국고지원 일몰을 각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4년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였다. 원고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보험료율 상한과 국고지원 일몰 규정을 폐지하기로 확정한 바 없으며,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4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주위적으로 정정,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보도내용에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중요부분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며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하였고,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도 기각하였으며, 일부 반론보도청구 부분은 피고의 의견표명에 불과한 내용이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③부분 기사의 주된 취지는 … 이대로 간다면 장래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는 내용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원고 측의 건강보험 재정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을 포함하는 의견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언론중재법 제16조를 근거로 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하여만 인정되는바(동조 제1항),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중 ③부분은 피고의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제3장

기타 참고사례

이 장에서는 분석대상판결에 해당되지 않으나, 언론조정실무 등에 유의미한 참고가 될 수 있는 판례를 선정·수록하였다.

2021년 판결 중 간접강제금을 추징당하게 된 언론사가 집행문 부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례 2건을 참고사례로 수록한다.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가합590820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 확정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여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은 채무자나 소송대리인의 전적인 잘못이며,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이행강제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언론사를 운영해 온 원고는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 확정된 판결에는 정정보도와 그 불이행에 따른 간접강제금이 명시되어 있었다. 2018. 4. 12. 확정된 판결은 같은 해 4. 17. 보조참가인 사무실로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정정보도를 청구했던 피고가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2020. 9. 25.에서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피고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8억 89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추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법원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대리인이 원고에게 판결 확정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정정보도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발생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강제금은 피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비해 과다하므로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며, 피고가 고액의 간접강제금을 노리고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의무이행을 최고하지 않았으므로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로서 일부 무효가 되거나 권리남용, 신의칙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집행문부여 이의 부분을 각하,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원고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선고기일이나 판결의 확정 사실 등을 통보받지 못하여 위 의무발생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나 원고 소송대리인의 전적인 잘못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금을 임의로 감액한다면 의무이행의 강제 수단이라는 간접강제금의 제도적 취지에도 반하고 사정변경 없이 집행권원을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 …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집행이 원고 주장과 같은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간접강제의 배상금은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수단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받을 손해의 유무 및 손해액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할 것이며 … 단지 원고가 정정보도의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었을 실제 손해가 이 사건 간접강제금에 비하여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집행이 실제 손해 상당액에 한하여만 허용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원고 측의 사정에 불과하고, 거기에 원고 스스로의 잘못이 결코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간접강제금의 액수가 상당한 다액에 이르렀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여 원고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거나, 그 집행 자체가 불법한 경우 또는 피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20가합590820 청구이의		
원	고	A 주식회사 보조참가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3. 17.
판	결	선	고	2021. 4. 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5296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 중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불허한다. 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5296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이 2020. 10. 15. 내어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불허한다(원고는 위 판결 중 간접강제결정 부분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바,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택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일간신문 'D'를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경부터 2012. 3. 19.경까지 E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나. 원고는 2011. 7. 13. D 9면에 「F」이라는 제목과 「모 의원 택시 애정행각 보좌관 여비서 성폭행 등 국회의장, 사실확인 지시」라는 부제목 하에 「… 지난 6월 초엔 수도권 S의원실의 유부남 보좌관이 미혼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의원회관에 퍼졌다. 여비서는 그만됐고, 보좌관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했다는 후문.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 다. 위 기사를 포함한 국회 내의 성추문 관련 기사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원고 및 그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I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제1심법원은 2014. 8.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L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법원은 2015. 6. 19. ①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D 9면 우측 하단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② 만일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에게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 ③ 원고는 M과 각자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¹⁸⁾하였다(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포함한다

18) 피고는 G와 그 소속 기자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일부 승소하였고, G와 그 소속 기자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위 항소심판결 전체를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라. 원고와 M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N으로 상고하였고, 기존 1, 2심의 소송 대리인이던 B 변호사(이 사건의 원고보조참가인이며, 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를 상고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선고기일통지서는 보조참가인의 사무실로 2018. 4. 5. 송달되었고, 대법원이 2018. 4. 12. 상고기각판결을 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 정보는 보조참가인의 사무실로 2018. 4. 17. 송달되었다.
- 마. G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인 2018. 4. 19.경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20. 9.경까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고 있다가 2020. 9. 13.경 피고로부터 입장 표명을 요구받은 이후인 2020. 9. 25.에서야 D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 바. 이후 피고는 2020. 10. 15.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자료(300만 원) 및 지연이자(3,410,548원), 간접강제금(이 사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7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4. 20.부터 원고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2020. 9. 25.까지 889일치 8억 8,900만 원. 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금'이라 한다) 등의 일부인 3억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20타채69495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O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2020. 10.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8, 12호증, 을 제8, 11, 13, 14, 18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4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허용되지 않는다(원고는 같은 사유를 주장하면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 ① 간접강제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 기간 이내에 채무의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 수단인바,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부담 사실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런데 원고는 소송대리인이던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상고심판결의 선고 사실이나 이 사건 판결의 확정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 또한 2020. 9. 13.경까지 원고나 M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20. 9. 13. 이전까지는 자신이 정정보도 의무를 부담하거나 간접강제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여기에 어떠한 귀책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간접강제금은

원고가 의무부담 사실 등을 알게 된 2020. 9. 13.에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9. 22.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부담할 간접강제금은 2020. 9. 22.부터 원고가 정정보도를 한 2020. 9. 25.까지 4일치인 합계 400만 원이 된다.¹⁹⁾

- ② 한편, 간접강제금은 채무자의 부대체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될 수 있는 것으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참조) 손해배상금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간접강제금은 피고가 입었을 실제 손해(정정보도의무이행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집행은 그 손해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 ③ 또한 원고가 간접강제금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사정, 그리고 피고가 고액의 간접강제금을 노리고 원고에게 의무이행을 적극적으로 최고하지 않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의무이행을 주장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간접강제금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에 기초한 책임 제한의 법리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간접강제금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간접강제금은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는 위약벌에 관한 일부 무효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당 부분이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이 사건 간접강제금 전부에 관한 집행은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피고가 자신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간접강제금의 액수가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청구이의의 소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법적 성격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이 정한 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고(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6331 판결 참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19) 만일 원고의 주장이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집행이 부당하다는 것을 넘어 간접강제금의 액수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이라면, 이는 간접강제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확정된 중국판결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관하여 기판력을 가지며 결정·명령재판에도 실제관계를 중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것인 경우에는 기판력이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참조), 간접강제결정은 채무자의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존부 및 그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배상금의 범위 등의 실제관계 판단을 구체화한 중국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간접강제 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간접강제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실제 알게 된 때로부터 간접강제금 이행의무가 발생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판결선고기일의 통지 및 판결 정본의 송달 등은 소송대리인에게 함으로써 효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선고기일 통지서가 2018. 4. 5.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대법원이 2018. 4. 12. 상고 기각판결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판결은 2018. 4. 12. 확정되었음이 명백하고, ① 간접강제금은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지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이행을 명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선고기일이나 판결의 확정 사실 등을 통보받지 못하여 위 의무발생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나 원고 소송대리인의 전적인 잘못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이 사건 판결에서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함께 이루어진 것은 피고에게 신속하고 확실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금을 임의로 감액한다면 의무이행의 강제 수단이라는 간접강제금의 제도적 취지에도 반하고 사정변경 없이 집행권원을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의 확정 사실을 실제로 언제 알았는지를 특정하기도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고심판결 선고기일이나 상고심판결 선고 및 확정 사실 등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제때에 알지 못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집행이 원고 주장과 같은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게다가, ① 원고는 정정보도의무와 간접강제결정이 적시된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후 스스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스스로 그 소송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점(이 사건과 같이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자신에 대한 여러 의무를 정하고 있는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로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상고심 진행경과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② 실무상 정정보도 사건의 인용 주문은 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 내에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년간 언론사를 운영하여 온 원고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결 확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데에는 원고의 잘못이 결코 작지 않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간접강제금은 피고가 실제 입었을 손해를 한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간접강제는 직접강제 등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 허용되는 집행 방법으로서, 채무자에게 배상금에 의한 제재를 예고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그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고, 간접강제의 배상금은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수단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받을 손해의 유무 및 손해액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할 것이며, 설령 본래의 손해배상채권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의 배상금은 채무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충당될 성질의 것이고, 배상금으로 충당하더라도 손해가 완전히 전보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액수가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하면, 배상금의 제재 예고에 의한 심리적 압박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그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취지에 반하므로,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다.

(2) 이에 비추어 보면, 만일 피고가 이미 추심한 간접강제금이 있을 경우 이를 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되, 단지 원고가 정정보도 의무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었을 실제 손해가 이 사건 간접강제금에 비하여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집행이 실제 손해 상당액에 한하여만 허용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책임제한 법리, 위약벌 일부 무효 법리의 적용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접강제금이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간접강제금은 어디까지나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부과되는 것이지, 이를 손해배상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 내지는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이미 확정된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간접강제금에 대하여 책임제한이나 일부 무효를 인정한다면 심리적 강제수단이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으로서 간접강제금이 가지는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이유로 하는 책임제한의 법리나 위약벌의 일부 무효 법리가 간접강제금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법리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별다른 법률상 근거도 없다.

-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 (1)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제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참조).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가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변경·소멸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불법한 경우에는 그 불법은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 비로소 이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의의 소를 허용해야 한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559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17436 판결 참조).

한편,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등 참조).

- (2) 살펴건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의 확정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장기간 의무이행을 최고하지 않았음을 탓하고 있으나, 원고에 대한 의무이행을 최고하여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다액의 간접강제금을 노리고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의무이행을 고의적으로 최고하지 않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과 앞서 본 여러 사정들, 특히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원고 측의 사정에 불과하고, 거기에 원고 스스로의 잘못이 결코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간접강제금의 액수가 상당한 다액에 이르렀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여 원고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거나, 그 집행 자체가 불법한 경우 또는 피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소 중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45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

225038 판결). 그런데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간접강제에서는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은 집행문부여에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한 집행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간접강제결정에서 명시된 이행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이 집행개시의 요건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간접강제를 위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위 2014다225038 판결 참조), 작위의무의 이행 등을 증명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원고의 주장은 집행권원에 붙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 이 사건 소 중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부분은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생략 -

언론사가 조정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도문 제목을 누락하고 일부 표현을 잘못 수정했다면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간접강제금을 제공해야 한다

[사실관계]

언론사인 원고는 모 정당 비서관이었던 피고에 대해 보도하였고, 피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자 정정보도 및 기사 내용 일부 수정에 합의하였다. 위원회 조정조서에 기재된 조정사항 중에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게재한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원고는 정정보도문의 ‘제목’ 부분을 제외하고 ‘본문’부분만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추가하였다. 또한 조정합의에 따르면 조정대상

기사 중 ‘낙태 강요도’ 라는 부분을 ‘낙태 요구 주장도’로 수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낙태 강요 주장도’로 수정하였다. 원고는 조정합의서상 2020년 9월 14일부터 위 사항을 이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의 항의를 받고서 2020년 11월 5일에서야 위 내용을 합의서 내용에 맞게 수정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조정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간접강제금을 추심하기 위해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원고는 원고의 착오로 제목 부분이 누락되고 기사 수정에 실수가 있었다더라도 정정보도의 전체 취지는 이 사건 조정조서의 내용에 그대로 따른 것이므로 간접강제금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 언론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2020년 9월 4일부터 2020년 11월 5일까지 52일간 1일 50만 원의 간접강제금 총 2천 6백만 원을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2천 6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정지결정을 일부 인용하였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조정사항에 따른 위 ‘제1항의 보도문’에는 보도문의 ‘본문’ 부분 외에도 ‘제목’ 부분이 별도의 구성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이 명백하다. 특히 이 사건 보도문의 경우에는 그 ‘제목’ 부분에만 [정정보도]라는 기재가 명시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별도 기사로 게재한 정정보도문 외에 이 사건 기사만을 접한 독자의 경우 이 사건 기사 하단에 게재된 보도문의 본문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임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제로 이 부분 조정사항 제3의 다.항에서는 이 사건 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보도문이 이 사건 기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게재’할 것을 아울러 요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보도문은 그 ‘본문’ 부분 외에 ‘제목’ 부분의 적시 또한 고유하고도,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낙태 강요'와 '낙태 요구'는 의사표시의 강제성 유무 등 각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와 어감이 전혀 다른 문구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조정사항에서 정한 '낙태 요구 주장도'로 수정하여야 할 것을 '낙태 강요 주장도'로 수정한 것을 두고 이 부분 조정사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20가합60166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원	고	주식회사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1. 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2020. 9. 10. D 정정청구 사건의 조정조서 중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6,000,000원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20카정3105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12. 7.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26,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2020. 9. 10. D 정정청구 사건의 조정조서 중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원고는 위 조정조서 중 간접강제결정 부분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점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도서 잡지의 출판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E정당 의원실 비서관 출신으로 원고가 2020년경 피고에 대한 보도를 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그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람이다.
- 나. 원고는 2020. 4. 20. 『F』라는 제목으로, E정당 의원의 비서관인 피고가 부부강간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취지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고, 위 사건에서 2020. 9. 10. 원, 피고 사이에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에 따른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정사항

1. 보도문

- 가. 제목 : [정정보도] 2020년 4월 20일자 'E정당 의원 비서관' 보도 관련
- 나. 본문 : B가 보도한 지난 4월 20일 「F」 제하의 기사 중 “해당 의원실은 문제의 비서관 A(37)씨를 사직처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라는 부분과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조만간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제출하면 곧바로 사직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는 부분 중 ‘사직’은 ‘직권면직’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기사 수정 사항

- 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제목 중 「낙태 강요도」를 「낙태 요구 주장도」로 수정한다.
- 나.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부제목 중 「“결혼 전 강제로 강간당해 불임 유발할 수 있는 성병 율아”」를 「“결혼 전 강간당해 불임 유발할 수 있는 성병 율아... 낙태 요구하여 400만원 입금” 주장」으로 수정한다.
- 다.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부제목 중 「“남편은 G 중독... 성관계 중 목 조르는 등의 강제적인 성관계 강요”」, 「“8개월 된 아이 낙태하라며 400만원 입금하기도”」를 삭제한다.

3. 피신청인은 2020. 9. 14.(월) 12:00부터 다음 항목들을 이행한다.

- 가. 홈페이지<사회>섹션에 통상의 보도문과 같은 방법으로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 나. 가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홈페이지의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홈페이지에서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게재한다.

라.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제2항에 따라 수정한다.

마. H, I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가, 나, 다, 라호의 사항을 즉시 전송하여 각 포털에서도 위 사항들이 검색 및 반영되도록 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

, 2020. 4. 19.자<사회>섹션, 「F」제하의 기사

4. 피신청인이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을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그 조정사항을 이행하였으나, 우선 이 사건 조정조서 중 조정사항(이하 '이 사건 조정사항'이라 한다) 제3의 다.항과 관련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인 이 사건 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 사건 조정사항 제1항에 따른 보도문(이하 '이 사건 보도문'이라 한다)의 내용 중 '제목' 부분은 제외한 채 '본문' 부분의 내용만을 게재하였고, 실제 이 사건 기사의 하단에서 이 사건 보도문의 '제목' 부분은 2020. 11. 5. 그 기재가 포함되어 게재가 이루어졌다.

마. 또한 이 사건 조정사항 제3의 라.항 및 제2의 가.항에서는, 이 사건 기사의 당초의 제목(«F») 중 일부 내용인 '낙태 강요도' 부분을 '낙태 요구 주장도'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는 위 제목 부분을 '낙태 강요 주장도'라고만 수정하였다가 마찬가지로 2020. 11. 5. 이 사건 조정조서의 위 수정 사항에 따라 '낙태 요구 주장도'로 수정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 중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 부분에 대한 집행문(이하 '이 사건 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아, 같은 해 11. 5.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정사항을 모두 이행하였고, 설령 원고의 이행사항에 일부 조정사항과는 문구상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원고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 정정보도의 전체 취지는 이 사건 조정조서의 내용에 그대로 따른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간접강제금의 법적 성격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이 정한 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고(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6331 판결 참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행기간 내에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조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정이 성립(2020. 9. 10.)된 이후 '2020. 9. 14.(월) 12:00'부터 원고로 하여금 그 조정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면서, ① 이 사건 조정사항 제3의 다.항에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게재한다.”라고 정하여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기사의 하단에 이 사건 보도문을 이 사건 기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게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또한 ② 이 사건 조정사항 제3의 라.항 및 제2의 가.항에서 이 사건 기사의 당초 제목 부분의 내용 중 '낙태 강요도' 부분을 '낙태 요구 주장도'로 수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정정보도의 전체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조정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20. 11. 5.까지 ① 이 사건 기사 하단의 정정보도문에는 이 사건 보도문의 '제목' 부분이 누락되었고, ②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부분 수정도 이 사건 조정사항의 문구('낙태 요구 주장도')와는 달리 '낙태 강요도' 부분이 '낙태 강요 주장도'로만 수정되어 있었던바 이러한 이행을 이 사건 조정사항에 따른 완전한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의 위 지적 사항이 모두 실제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점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이 사건 조정사항 제3의 다.항에서는 이 사건 기사 하단에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조정사항에 따른 위 '제1항의 보도문'에는 보도문의 '본문' 부분 외에도 '제목' 부분이 별도의 구성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이 명백하다. 특히 이 사건 보도문의 경우에는 그 '제목' 부분에만 [정정보도]라는 기재가 명시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별도 기사로

게재한 정정보도문 외에 이 사건 기사만을 접한 독자의 경우 이 사건 기사 하단에 게재된 보도문의 본문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임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제로 이 부분 조정사항 제3의 다.항에서는 이 사건 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보도문이 이 사건 기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게재’할 것을 아울러 요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보도문은 그 ‘본문’ 부분 외에 ‘제목’ 부분의 적시 또한 고유하고도,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낙태 강요’와 ‘낙태 요구’는 의사표시의 강제성 유무 등 각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와 어감이 전혀 다른 문구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조정사항에서 정한 ‘낙태 요구 주장도’로 수정하여야 할 것을 ‘낙태 강요 주장도’로 수정한 것을 두고 이 부분 조정사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부분의 이행이 원고의 착오에 기인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의무사항의 불이행이 이행 완료로 간주될 수 없다. 이 사건 조정사항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집행할 수 있는 간접강제금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2020. 9. 14.’까지 이 사건 조정사항을 전부 이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기사 하단의 보도문에 이 사건 보도문의 ‘제목’ 부분을 포함하여 게재하고, 또한 이 사건 기사의 당초 제목 부분을 ‘낙태 요구 주장도’로 수정하여 게재함으로써 그 이행을 완료한 시점은 ‘2020. 11. 5.’이고,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간접강제금은 지연일 수 1일당 50만 원이므로, 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그 이행이 지연된 기간(52일) 동안의 간접강제금 합계 26,000,000원(= 1일 50만 원 × 52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전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심리결과 일부만이 소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멸한 범위에서 일부 인용판결을 하여야 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249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6,000,000원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